보안 과제( ), 일반 과제(O) / 공개(O), 비공개(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최종보고서

수탁 / 2025-03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26. 1. 28.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개발기간 : 2025.1.1. ~ 2025.12.31.)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1. 28.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 구명회
참여연구자 : 김주호
김현홍
김다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공고번호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정책결정/집행)	50%	SB1199 (공공정책)	30%	SB9999 (정치/행정)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	-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영문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영문	The Study on indirect-cost ratio allocation and system management of National R&D Funding for non-profit corporation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	229-82-01678
	주소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법인등록번호	110271-0004210
연구책임자	성명	구명회	직위	연구위원
연구개발기간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326,000	-	-	-	-	-	-	326,000	-	326,000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없음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김다빈	직위	연구원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연구책임자: 구 명 회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오 태 석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요 약 문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비 관리제도 운영·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SB1102 (정책결정/집행)	50%	SB1199 (공공정책)	30%	SB9999 (정치/행정)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제도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5. 1. 1.~ 2025. 12. 31.						
총 연구개발비	총 326,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6,000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전체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155개 기관 대상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추진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마련 -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연구개발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155개 기관)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사항 발굴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고시자료로 활용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반영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해당 사항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1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기타
	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보고서 원문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안건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국제 협력	(정책) 홍보	포상·수상	
			1			2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영문핵심어 (5개 이내)	Natiional R&D project	university, college	Indirect-cost ratio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운영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합리적인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회계 전문법인을 활용한 간접비실사비율(안)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산출기준 마련)**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155개 기관)
- **(제도개선사항 발굴)**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최종보고서

'25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5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25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25	최종보고서	2026.1.28.	수탁 / 2025-030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1	고시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2026.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안건 상정

번호	상정위원회	안건명	상정일자	안건내용
1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2025.1.17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심의·의결
2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2025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2026.1.22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의결

□ 제도 개선

번호	제도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추진일자	개선내용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정책)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홍보효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기타 성과]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1.17)	• 100%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의결 및 고시	•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하여 간접비계상기준 산출 위원회 심의·의결('25.12.19)을 하였고, 심의·의결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고시('26.1.22.)	• 100%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과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 100%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자체 보완활동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합리적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기여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효율에 기여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사항은 2027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활용할 계획임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요 약 문

✦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 대학에 대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필요

○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간접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Ⅱ. 연구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한 세부 산출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에 대한 2026~2027년(2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대학 분야

- 회계사가 소속된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한 간접비실사비율(안)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의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 확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Ⅲ. 연구결과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세부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산출기준 결정
- 2025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직원 및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분류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직원 및 대학 소속 직원 중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를 말함	○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직원 및 대학 소속 직원 중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연구지원 업무는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및 자산관리,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연구개발성과 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연구보안관리 업무를 말하며, 창업보육은 그 외의 지원 업무로 구분함 -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하고, 그 외 업무 또는 겸직인 경우는 공통지원 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연구지원 업무(국가R&D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업체(용역업체)에 소속된 파견 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성 경비를 불인정 -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 제출
연구수익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오류로 인해 일부 연구수익으로 분류한 교육수익을 재분류하지 않아도 연구수익으로 인정	○ 산학협력단 결산서 상 연구수익 중 연구수익 성격이 아닌 교육수익은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교육수익으로 재 분류하여 인정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대학원,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결과 향후 아래 대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 필요

- 1안) 기존 방식 준수 및 사무분장표 제출
- 2안) 간편법(연구실적 x 직전 간접비 고시비율) 한도 설정
- 3안) 인건비 산출식 수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회계 전문법인을 활용한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 대학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및 대학별 관계자 대면 검증 후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간접비실사비율(안) 도출

○ 일부 대학에 대하여 2명의 검증위원이 심층 검증을 수행

○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산출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25.12.19)를 거쳐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최종 확정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26.1.22.)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현황(총괄)

- '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참여 대학 155개 대학 중 50점 미만 대학(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등을 제외한 144개 대학의 간접비 원가 산출

산출대상	원가산출	비 고
155개	144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 11개 대학*

* 연구지원체계평가 50점 미만 대학 11개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위덕대학교, 인덕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평택대학교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내역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립부경대학교	21.04
2	가톨릭관동대학교	23.87	32	국립순천대학교	22.12
3	가톨릭대학교	21.15	33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7.20
4	강남대학교	12.79	34	국립창원대학교	24.33
5	강원대학교	20.20	35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4.23
6	건국대학교	27.04	36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89
7	건양대학교	28.35	37	국립한밭대학교	27.25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5	38	국민대학교	26.01
9	경기대학교	24.42	39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00
10	경남대학교	26.93	40	극동대학교	12.99
11	경북대학교	24.83	41	나사렛대학교	15.06
12	경상국립대학교	23.62	42	남부대학교	16.24
13	경성대학교	20.09	43	남서울대학교	25.24
14	경운대학교	7.30	44	단국대학교	25.31
15	경인교육대학교	12.61	45	대구가톨릭대학교	28.42
16	경일대학교	14.49	46	대구대학교	20.10
17	경희대학교	26.43	47	대구한의대학교	26.17
18	계명대학교	22.78	48	대전대학교	24.70
19	고려대학교	24.34	49	대진대학교	22.85
20	고신대학교	29.00	50	덕성여자대학교	25.19
21	광운대학교	25.70	51	동국대학교	23.75
22	광주대학교	17.31	52	동덕여자대학교	22.67
23	광주여자대학교	7.39	53	동명대학교	28.42
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1.95	54	동서대학교	27.84
25	국립경국대학교	25.55	55	동신대학교	20.13
26	국립공주대학교	29.87	56	동아대학교	25.25
27	국립군산대학교	17.84	57	동양대학교	7.91
28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7.45	58	동양미래대학교	5.00
29	국립목포대학교	17.92	59	동의대학교	24.45
30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2.66	60	명지대학교	23.06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61	명지전문대학	5.00
62	목원대학교	17.55
63	배재대학교	26.69
64	백석대학교	13.87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7.16
66	부산대학교	18.46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3.25
68	부천대학교	21.56
69	북한대학원대학교	5.00
70	삼육대학교	25.82
71	상명대학교	27.89
72	상지대학교	27.44
73	서강대학교	27.87
74	서경대학교	16.49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8.00
76	서울교육대학교	12.82
77	서울대학교	27.01
78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0.00
79	서울시립대학교	27.97
80	서울여자대학교	29.70
81	서원대학교	20.58
82	서일대학교	5.00
83	선문대학교	26.64
84	성공회대학교	9.38
85	성균관대학교	26.30
86	성신여자대학교	25.20
87	세명대학교	16.70
88	세종대학교	25.77
89	수원대학교	29.87
90	숙명여자대학교	26.47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91	순천향대학교	23.86
92	숭실대학교	26.09
93	신라대학교	26.76
94	아주대학교	28.00
95	안양대학교	18.99
96	연세대학교	28.84
97	영남대학교	20.32
98	영산대학교	27.44
99	용인대학교	5.00
100	우석대학교	26.71
101	우송대학교	11.04
102	울산과학대학교	5.00
103	울산대학교	24.14
104	원광대학교	29.12
105	위덕대학교	5.00
106	육군사관학교	14.96
107	을지대학교	23.63
108	이화여자대학교	27.55
109	인덕대학교	5.00
110	인제대학교	21.88
111	인천대학교	30.90
112	인하공업전문대학	19.05
113	인하대학교	25.15
114	전남대학교	20.43
115	전북대학교	22.32
116	전주대학교	18.46
117	제주대학교	26.94
118	조선대학교	29.00
119	중부대학교	16.17
120	중앙대학교	22.21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21	중원대학교	30.07
122	차의과학대학교	28.84
123	창신대학교	29.40
124	청주대학교	17.24
125	춘천교육대학교	5.00
126	충남대학교	21.71
127	충북대학교	21.12
128	평택대학교	5.00
129	포항공과대학교	19.74
130	한경국립대학교	22.97
131	한국공학대학교	19.49
132	한국교원대학교	9.73
1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86
134	한국농수산대학교	13.65
13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81
136	한국예술종합학교	26.49
137	한국외국어대학교	25.87
13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36
13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46
140	한국체육대학교	15.51
141	한국항공대학교	25.10
142	한남대학교	20.65
143	한동대학교	26.32
144	한라대학교	15.38
14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04
146	한림대학교	21.16
147	한서대학교	22.78
148	한성대학교	15.30
149	한신대학교	12.72
150	한양대학교	23.36
151	한양여자대학교	13.97
152	협성대학교	16.19
153	호남대학교	17.27
154	호서대학교	25.79
155	홍익대학교	18.01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3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4

제2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 5

제1절 추진근거 ····· 7

제2절 추진경과 ····· 7

제3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9

제4절 가·감률 기준 ····· 10

제3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결과 ····· 13

제1절 산출 개요 ····· 15

1. 대상기관 ····· 15

2. 공고 및 설명회 ····· 15

3. 산출절차 ····· 18

4. 제출자료 ····· 19

5. 산출방법 ····· 21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 32

제4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마련 ····· 37

제1절 추진배경 ····· 39

제2절 추진경과 ····· 39

제3절 '24년 전문가 회의결과 인건비 분류방안 및 '25년도 산출기준(2025.01.) ····· 42

제4절 2027년도 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개선안 ····· 44

제5장 결론 ····· 49

[붙임]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 53

표 목 차

〈표 2-1〉 2025년도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 10
〈표 2-2〉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기준 ····· 10
〈표 2-3〉 '25년도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 11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 11

〈표 3-1〉 기초자료 제출 목록 ····· 19
〈표 3-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 32
〈표 3-3〉 '23년도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 32
〈표 3-4〉 2025년도 대학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34

〈표 4-1〉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마련 추진 경과 ····· 40
〈표 4-2〉 간편법(한도설정 방식) 적용에 따른 간접비 실사율 변동 양상 ····· 47

그 림 목 차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 4

[그림 3-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 18
[그림 3-2]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변동 추이('11~'25) ····· 3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간접비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에서 간접비의 비중과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에 기여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간접비 비중의 증가추세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학에 대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대학별로 적절한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 제1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는 간접비계상기준 적용 대상 기관 및 산정에 관한 사항 심의·확정

□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방식, 산출절차 등 세부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별 2026~2027년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단과대학 및 산단 부속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 분류를 위한 근거자료 기준(안) 마련이 필요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정

○ 대학 소속 회계 및 간접비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산출소위원회를 통한 간접비 제도 개선 추진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개선안 도출

○ 도출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 용역을 활용한 대학별 간접비실시비율 산출

- 산출된 간접비실사비율(안)에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기관별 가·감률을 반영하여 '25년도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26. 1. 22.)

○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체계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제 2 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제1절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계상기준 적용 대상 기관 및 산정에 관한 사항 확정

>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25.1.17/제1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 기관 및 세부 산출기준 확정

○ '25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 및 제공고('25.1.15/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25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설명회('25.1.22, KIRD 온라인)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접수('25.1.23~'25.6.30)

※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참여 대학(155개)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서류검토 회의('25.7.1~11)

- 대학 제출 서류에 대한 형식적·내용적 타당성 검토
- 대학별 수정·보완 서류 제출 항목 도출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을 위한 대면 검증('25.7.15.~7.25.)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검증('25.8.29, 9.26/2회)

-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적용기준 확정 등
- 연구실 안전관리부서 공통부문 지원 부서 추가에 따른 가이드라인 논의 및 결정

○ '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25.10.27~31.)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최종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25.11.7.~12.05.)

○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안)에 대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안건 심의('25.1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에 고시('26.1.22.)

제3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대학 간접비실사비율(원가산출식) = A + B

■ A(연구지원부문) = $\frac{\text{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연간연구비}}$

■ B(공통지원부문) = $\frac{\text{(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연구수익비율}}{\text{연간연구비}}$

※ 대학운영 비용을 ① 연구지원부문(A), ② 교육지원부문, ③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산출 원칙

○ 2개(2023, 2024) 회계연도 간접비 실지출율을 원가산출식에 따라 계산(A+B) 후 산술평균하여 간접비실사비율 산정

○ 연구지원부문(A)

- 연구를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산학협혁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 중 간접비 사업비 항목의 연구관리운영비* 반영

  * 연구지원비(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및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학교회계*의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진흥경비로 반영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 공통지원부문(B)

-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비율* 적용

  *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 R&D계수 적용사업은 R&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

○ 간접비실사비율에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 실사율에 따른 대학별 상한기준 적용

〈표 2-1〉 2025년도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실사율	40%p 이상	35%p 이상	30%p 이상	28%p 이상	28%p 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원가산출) ± C(가·감률)

- 간접비 원가산출 후(대학은 상한기준 적용 이후) 가·감률 적용

①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또는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②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대학, ③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은 간접비고시비율을 각각 5% 적용

제4절 가·감률 기준

□ 대학별 간접비 원가 산출 후 가·감률 기준을 적용

○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표 2-2〉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기준

연구 규모	평가결과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250억 이상)	10%	6%	3%	0%	-3%	-6%	-10%
중 (250억 미만~ 100억 이상)					-2%	-4%	-6%
소 (100억 미만)					-1%	-2%	-3%

※ (예시1) 간접비실사비율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규모 "대"인 기관의 경우 : "실사비율 23% x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 6%" 인 1.38%p를 간접비실사비율에 가산하여 24.48%로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승수) 기준

〈표 2-3〉 '25년도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2개 회계연도 누계)	감률
•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예시2) 간접비실사비율이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수익규모 "대", 기관별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 간접비상한적용비율×(1+(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부실자료제출 감률)) =23%×(1+(0.06-0.03)) = 23.69%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 (최대 -3%p)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p	0.6	1.8%p
2건	3%p	0.7	2.1%p
3건	3%p	0.8	2.4%p
4건	3%p	0.9	2.7%p
5건 이상	3%p	1.0	3.0%p

(예시3) 상기 예시2에 추가하여 부당자료 적발·통보 1건인 경우 : 23.69%-1.8%p = 21.89%

※ 간접비 사용용도 위반의 경우에도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기준에 따라 감률 적용함

◇ 간접비고시비율 결정 시 가·감률 적용방법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산정 후 아래 순서대로 가·감률 적용

= {간접비상한적용비율 × (1 + ①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②부실자료제출 감률)} + ③부당자료제출 감률

제 3 장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결과



제1절 산출 개요

1. 대상기관

□ 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 155개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포함)

□ 산출 대학 현황

○ 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155개) 중 11개 대학*을 제외하고, 144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50점 미만 대학 11개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위덕대학교, 인덕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평택대학교

2. 공고 및 설명회

□ **1차 공고**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041호

○ 공고내용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산출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대상기관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고등교육법」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5% 적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 2025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대학

  · 2025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붙임 3 표준 템플릿 참조)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작성지침 및 템플릿 온라인 설명회 : 2025. 1. 22(수), 14:00~16:4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설명회

※ 온라인 접속방법은 k2base에 추후 공지

○ 신청기간 : 2025. 1. 23(목) ~ 6. 30(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 산출절차 :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대면검증, (3단계) 이의신청 심의, (4단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5단계) 고시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다빈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720, dbkim@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

【붙임 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부.
【붙임 2】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부.
【붙임 3】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표준 템플릿 1부.
【붙임 4】 K2Base 홈페이지 이용방법 1부.

□ 2차 재 공고

○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76호

○ 공고내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연구지원체계평가 및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평가수행 및 산출전담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

○ 산출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대상기관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고등교육법」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은 5% 적용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인 대학

  · 2025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대학

  · 2025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대학

○ 제출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1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1부

○ 신청기간

  · 산출 신청서 : 2025. 5. 28(수), 18:00까지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2025. 6. 30(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K2Base 시스템(www.k2base.re.kr)에 업로드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김다빈 연구원/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720, dbkim@kistep.re.kr/043-750-2313, mhgu@kistep.re.kr)

【붙임 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1부.

【붙임 2】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부.

【붙임 3】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표준 템플릿 1부.

【붙임 4】 K2Base 홈페이지 이용방법 1부.

□ 설명회

○ 일시 : 2025.1. 22(수), 14:00~16:40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Zoom

○ 내용 : 대학 간접비 산출기준,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표준 템플릿 설명(질의응답은 추후 Q&A로 제공 예정)

○ 자료 : 첨부된 붙임[1,2,3]파일(별도의 발표 자료는 없으며, 산출 공고 시 안내드린 자료와 동일)

일시 및 장소	일정 및 내용
2025.1.22(수) 14- 16시40분	(14시-14시10분) Zoom 입장 및 오리엔테이션
	(14시10분-14시20분) 산출기준 설명
	(14시20분-15시40분)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5시40분-15시50분) 휴식
	(15시50분-16시40분) 표준 템플릿 설명 및 마무리

3. 산출절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따라 KISTEP에서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을 산출하고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계상기준 고시

※ 고시 적용기간 : 당해 년도 계상기준 고시일 ~ 다음 계상기준 고시 전일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추진사항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및 서식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학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보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그림 3-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4. 제출자료

□ **기본자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2개년도 결산자료 등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표 3-1〉 기초자료 제출 목록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0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엑셀	필수	O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한글/ PDF	필수	O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국립대학/사립대학)		엑셀	필수	O
3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날인본		PDF	필수	O
4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4-1.(국립)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O
		4-2.(사립)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O
5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	5-1. 산학협력단 재무상태표	엑셀/ PDF	필수	O
		5-2.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엑셀/ PDF	필수	O
6	학교회계 외부감사보고서		PDF	필수	X
7	산학협력단 외부감사보고서		PDF	필수	X
8	정보공시 내용	8-1. 연구비 수혜실적	엑셀	필수	O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	엑셀	필수	O
		8-1-2. 연구수익 조정	엑셀	필수	O
		8-1-3. 국가R&D 실적 판단	엑셀	필수	O
		8-2. 부설연구소 현황	엑셀	필수	O
		8-3. 장학금 수혜혜택	엑셀	필수	O
		8-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_인력현황	엑셀	필수	O
		8-5.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엑셀	필수	O
9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9-1-1.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인력 개인별 업무내역	엑셀	필수	O
		9-2.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엑셀	예시	O
		9-3. 대학 부서별 업무내역/업무분장표	엑셀	예시	O
		9-4.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엑셀	예시	O
		9-5. 대학 조직도	자유형식	필수	X
		9-6. 대학 전화번호부	자유형식	필수	X
		9-7. 연구소별 연구내역(연구소 인력 반영시만)	엑셀	필수	O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10-1. 산학협력단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10-1-1.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 직원 개인별 업무내역	엑셀	필수	O
		10-2. 인건비와 결산서 대사검증	엑셀	예시	O
		10-3. 산학협력단 부서별 업무내역	엑셀	예시	O
		10-4. 공시자료와 인원수 대사	엑셀	예시	O
		10-5.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10-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및 집행문서	자유형식	예시	X
		10-7. 연구소별 연구내역(연구소 인력 반영시만)	엑셀	필수	O
		10-8. 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11-1. 기관 공통 비용	엑셀	필수	O
		11-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엑셀	필수	O
		11-3.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엑셀	필수	O
		11-4. 연구실안전관리비	엑셀	필수	O
		11-5. 학생산재보험료	엑셀	필수	O
		11-6. 연구보안관리바	엑셀	필수	O
		11-7. 연구윤리활동비	엑셀	필수	O
		11-8. 연구활동지원금	엑셀	필수	O
		11-9. 과학문화활동비	엑셀	필수	O
		11-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엑셀	필수	O
		11-11. 기술 창업 출연·출자금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원칙) 또는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간편법)	엑셀	필수	O
1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내역	12-1.연구진흥경비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3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3-1. 정부 제출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3-2. 근거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4	공통지원관리운영비 내역	14-1. 공통지원관리운영비 조정금액 내역	엑셀	필수	O
		14-2. (국립)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엑셀	필수	O
		14-3. (국립)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내역 안분	엑셀	필수	O
		14-4. (국립) 코러스 자료	엑셀	필수	O
		14-5. (사립)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총괄	엑셀	필수	O
		14-6. (사립)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엑셀	필수	O
15	공공요금 산출내역	15-1.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엑셀	필수	O
		15-2. 공공요금 배분양식	엑셀	필수	O
		15-3. 공공요금 청구 및 집행내역	엑셀	필수	O
		15-4. 분기별 청구공문 및 이체확인증	엑셀	필수	X
16	연간연구비	16-1.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산정내역(원칙) 또는 16-2.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산정내역(간편법)	엑셀	필수	O
17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내역	17-1.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	엑셀	필수	O
18	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18-1.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국립대학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만 작성)	엑셀	필수	O
		18-2. R&D계수 적용사업 수익 근거자료	자유형식	필수	X
19	간접비 관련 규정	19-1. 간접비 관리규정	자유형식	필수	X
		19-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기준	자유형식	필수	X
20	간접비 지출내역서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엑셀	필수	O
		20-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엑셀	필수	O
2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한글/ PDF	필수	O

□ **별도자료:**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 자료

5. 산출방법

가. 대면검토

□ 제목 : 2025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대면검증 실시 (2023 및 2024회계연도)

□ 대상 :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평가결과 50점 이상 대학

□ 일정 : ’25. 7. 15(수) ~ ’25. 7. 25(금), 9일/서울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건물 943동 5층)

□ 방법

○ (검증 방법) 각 대학별로 유선 또는 대면 실사를 통해 심층 검증 진행

○ (맞춤형 실사) 실사의 효과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간접비 실사방법(대면 여부, 투입인원)을 조정

대학 구분	(평균)연간 연구비 수준	대상 대학 수 (*1)	검증담당 인원	심층검증 방법	심층실사 일정
小규모	약 150억원 미만	85	담당 3인 (지원 2인)	유선실사 (전화질의)	7.15~25 (이메일 통보)
中규모	약 1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9	담당 2인	대면실사	7.15~25 (9日) 대학당 1시간 30분
大규모	약 500억원 이상	31	담당 2인	대면실사	7.15~25 (9日) 대학당 약 2시간
합 계		155			

※ 대면실사가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의 大中小 분류와는 다름

○ 대면일정 시간표

회차	검증시간	소요시간	연구비 규모
1회차	오전 09:30-11:00	1시간 30분	중규모
2회차	오전 11:10-12:40	1시간 30분	중규모
(중식)	오후 12:40-14:00	-	-
3회차	오후 14:00-16:00	2시간	대규모
4회차	오후 16:10-18:00	1시간 50분	대규모

※ 7.15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

□ 일정계획

○ (서면검증) 7.1~7.11 : 전체 대학에 대하여 기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단순오류 사항 점검

○ (실사검증) 7.14~7.25 : 소규모 대학 실사(유선, 메일), 중규모 및 대규모 대학 실사(대면검증)

〈대학 간접비 서면검증 및 실사검증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날짜	6/30	7/1	7/2	7/3	7/4
업무	서류검토 및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 점검				
날짜	7/7	7/8	7/9	7/10	7/11
업무	서류검토 및 기본 체크리스트 사항 점검				
날짜	**7/14**	**7/15**	**7/16**	**7/17**	**7/18**
업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대학 실사**				
날짜	**7/21**	**7/22**	**7/23**	**7/24**	**7/25**
업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대학 실사**				

□ 기타

○ **(제출자료)** 산출 관련 인쇄자료 1부

※ 2023·2024 회계연도 산출 관련 자료(표준 템플릿,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증빙서류 등) 및 필요시 노트북 1대

○ **(요청사항)**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학별 2~3인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 및 주차권 제공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 권고

□ 검증 프로세스

일정	구분	검증 단계	비고
6월말	**대학**	• **산출 기초자료 1차 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7월	검증팀	• 산출 기초자료 1차 서면 검증	
		• 수정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 (구두 또는 이메일 통보)	• 대학별 실사검증 단계에서 통보
7월, 8월	검증팀	• **대학별 실사검증 실시** - 소규모 대학(85개): 유선검증 - 중·대규모 대학(70개): 대면검증 • 중규모: 대학별 약 1시간 30분 • 대규모: 대학별 약 2시간	• 대학에 검증팀의 수정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수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산출 기초자료 제출 요청

일정	구분	검증 단계	비고
	검증팀과 대학의 소통과정	• **산출 기초자료 보완 소통** – (대학이 수정 권고사항 수용 시) 대학은 수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산출 기초자료 제출 – (대학이 수정 권고사항 미수용 시) 대학은 산출 기초자료와 **소명서(증빙 포함)* 제출** → 검증팀은 소명서 추가 검토 – 검증팀은 권고사항 반영한 산출 기초자료 및 소명서 **검토 완료 시 각 대학별로 안내 메일 발송**	• (소통방식) **k2base123@naver.com** 대학간접비 **검증팀 전용메일로 송부** – 검증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답변 요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반드시 "2025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소명서[별첨1]" 양식에 작성하되 **날인하지 않고 한글파일로만 제출**
	대학	• **산출 기초자료 2차 제출** – KISTEP에서 별도 안내 시 제출 – 최종 수정 권고사항 반영한 산출 기초자료 일체를 제출 * 대학에서 수용한 수정 권고사항은 산출양식에 적색으로 표시 – 다만, 대학과 검증팀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미반영된 수정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대학은 쟁점사항 소명서*를 함께 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 산출 기초자료 2차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첫 장 대학명 옆에 **날인한 PDF 파일**을 엑셀 템플릿 파일과 함께 제출 • 소명서는 k2base123@naver.com 대학간접비 검증팀 전용메일로 추가 송부해야 접수됨 ※ 반드시 "2025년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소명서[별첨1]" 양식에 작성하되 **날인한 PDF 파일을 한글파일과 함께 제출**
	검증팀	• 2차 제출된 산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대학별 쟁점사항을 간접비 산출소위에 보고	• 필요시 대면검증 추가 실시 가능
	간접비 산출소위	• 대학별 쟁점사항 논의 및 산출소위 검토결과 확정	
	KISTEP	• 대학에 산출소위 검토결과 통보	• 쟁점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음
9월	**대학**	• **산출 기초자료 3차 제출** – KISTEP에서 별도 안내 시 제출 – 대학은 산출소위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산출 기초자료 제출 * 간접비 산출소위 검토결과에 따라 산출양식에 적색으로 표시 – 한편 8월말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완료 후 대학은 자가 검증 절차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제출	• (제출방식) K2Base에 업로드 • 자가 검증에 따른 자료 수정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나, 9월말 이후 점검 과정에서 해당사항 발견 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주
	KISTEP	• 대학에 최종 고시비율(안) 통보	
	※ **이의신청 프로세스** (해당 시) [별첨2] 참조		
	대학	• 최종(안)에 대해 이의신청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은 이후 KISTEP 안내에 따라 진행
	이의신청 심의 위원회	• 대학별 이의신청서 재검토	
	KISTEP	• 대학에 이의신청서 결과 통보	

□ 대학별 간접비실사비율 대면검증 세부 일정

○ **대규모 및 중규모 대학(70개)** : 팀별로 검증위원 각 2인

일자	시간	1팀	2팀
2025.07.15(화)	(10:00~11:30)	국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대학교)
2025.07.15(화)	(14:00~16:00)	차의과학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025.07.15(화)	(16:10~18:00)	대전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2025.07.16(수)	(09:30~11:00)	상명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2025.07.16(수)	(11:10~12:40)	동의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2025.07.16(수)	(14:00~16:00)	순천향대학교	한림대학교
2025.07.16(수)	(16:10~18:00)	인하대학교	세종대학교
2025.07.17(목)	(09:30~11:00)	숭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2025.07.17(목)	(11:10~12:40)	계명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5.07.17(목)	(14:00~16:00)	단국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2025.07.17(목)	(16:10~18:00)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2025.07.18(금)	(09:30~11:00)	호서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2025.07.18(금)	(11:10~12:40)	원광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2025.07.18(금)	(14:00~16:00)	영남대학교	충북대학교
2025.07.18(금)	(16:10~18:00)	중앙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07.21(월)	(09:30~11:00)	경기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2025.07.21(월)	(11:10~12:40)	대구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025.07.21(월)	(14:00~16:00)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2025.07.21(월)	(16:10~18:00)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2025.07.22(화)	(09:30~11:00)	광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5.07.22(화)	(11:10~12:40)	인제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5.07.22(화)	(14:00~16:00)	한양대학교	가천대학교
2025.07.22(화)	(16:10~18:00)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2025.07.23(수)	(09:30~11:00)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2025.07.23(수)	(11:10~12:40)	동아대학교	제주대학교
2025.07.23(수)	(14:00~16:00)	포항공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2025.07.23(수)	(16:10~18:00)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
2025.07.24(목)	(09:30~11:00)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07.24(목)	(11:10~12:40)	대구가톨릭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2025.07.24(목)	(14:00~16:00)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2025.07.24(목)	(16:10~18:00)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2025.07.25(금)	(09:30~11:00)	홍익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2025.07.25(금)	(11:10~12:40)	서강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2025.07.25(금)	(14:00~16:00)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2025.07.25(금)	(16:10~18:00)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 **소규모대학(85개)** 유선 및 이메일 검증(일정 미확정, 개별 연락)

1팀	2팀	3팀	4팀	5팀
가톨릭관동대학교	남부대학교	부천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강남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용인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건양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삼육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진대학교	상지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우송대학교
경남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위덕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운대학교	동명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동서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을지대학교	한남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신대학교	서원대학교	인덕대학교	한동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서일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라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성공회대학교	중부대학교	한서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원대학교	한성대학교
국립암센터국제대학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세명대학교	창신대학교	한신대학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신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협성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호남대학교

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1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5. 6. 20(목) 10:00~12: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22층 대회의실

○ 안건

- 2025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일정 및 절차
-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실사 검증 추진계획
-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논의사항
-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예상 쟁점사항
- 2025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 2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8. 29(화) 10:00~16:00/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소회의실B

○ 안건

-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안) 논의 및 결정

□ 3차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9. 26(금) 10:00~12:00/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08호 회의실

○ 안건

- 대학 안전관리부서 공통지원부문 인정 가이드라인(안) 논의 및 결정

다. ’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가·감률 기준 반영(10.27~31)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	가천대학교	B
2	가톨릭관동대학교	E
3	가톨릭대학교	C
4	강남대학교	E
5	강원대학교	B
6	건국대학교	C
7	건양대학교	B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F
9	경기대학교	E
10	경남대학교	B
11	경북대학교	B
12	경상국립대학교	B
13	경성대학교	D
14	경운대학교	F
15	경인교육대학교	F
16	경일대학교	E
17	경희대학교	A
18	계명대학교	C
19	고려대학교	B
20	고신대학교	C
21	광운대학교	C
22	광주대학교	E
23	광주여자대학교	F
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D
25	국립경국대학교	C
26	국립공주대학교	B
27	국립군산대학교	C
28	국립금오공과대학교	B
29	국립목포대학교	B
30	국립목포해양대학교	D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31	국립부경대학교	C
32	국립순천대학교	B
33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E
34	국립창원대학교	B
35	국립한국교통대학교	B
36	국립한국해양대학교	B
37	국립한밭대학교	B
38	국민대학교	B
39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F
40	극동대학교	F
41	나사렛대학교	F
42	남부대학교	D
43	남서울대학교	D
44	단국대학교	B
45	대구가톨릭대학교	D
46	대구대학교	D
47	대구한의대학교	A
48	대전대학교	D
49	대진대학교	C
50	덕성여자대학교	D
51	동국대학교	A
52	동덕여자대학교	F
53	동명대학교	E
54	동서대학교	E
55	동신대학교	F
56	동아대학교	C
57	동양대학교	F
58	동양미래대학교*	F
59	동의대학교	B
60	명지대학교	C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61	명지전문대학*	F
62	목원대학교	D
63	배재대학교	B
64	백석대학교	F
65	부산가톨릭대학교	F
66	부산대학교	B
67	부산외국어대학교	E
68	부천대학교	F
69	북한대학원대학교*	F
70	삼육대학교	C
71	상명대학교	B
72	상지대학교	E
73	서강대학교	B
74	서경대학교	C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
76	서울교육대학교	D
77	서울대학교	C
78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D
79	서울시립대학교	A
80	서울여자대학교	D
81	서원대학교	D
82	서일대학교*	F
83	선문대학교	B
84	성공회대학교	F
85	성균관대학교	A
86	성신여자대학교	D
87	세명대학교	F
88	세종대학교	B
89	수원대학교	B
90	숙명여자대학교	C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91	순천향대학교	C
92	숭실대학교	C
93	신라대학교	C
94	아주대학교	B
95	안양대학교	E
96	연세대학교	B
97	영남대학교	B
98	영산대학교	E
99	용인대학교*	F
100	우석대학교	E
101	우송대학교	F
102	울산과학대학교*	F
103	울산대학교	C
104	원광대학교	A
105	위덕대학교*	F
106	육군사관학교	F
107	을지대학교	E
108	이화여자대학교	C
109	인덕대학교*	F
110	인제대학교	C
111	인천대학교	B
112	인하공업전문대학	F
113	인하대학교	B
114	전남대학교	B
115	전북대학교	C
116	전주대학교	C
117	제주대학교	B
118	조선대학교	C
119	중부대학교	F
120	중앙대학교	B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21	중원대학교	F
122	차의과학대학교	B
123	창신대학교	E
124	청주대학교	D
125	춘천교육대학교*	F
126	충남대학교	B
127	충북대학교	C
128	평택대학교*	F
129	포항공과대학교	C
130	한경국립대학교	E
131	한국공학대학교	B
132	한국교원대학교	E
1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
134	한국농수산대학교	D
13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F
136	한국예술종합학교	E
137	한국외국어대학교	B
13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E

연번	기관명	최종등급
13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F
140	한국체육대학교	F
141	한국항공대학교	C
142	한남대학교	C
143	한동대학교	F
144	한라대학교	D
14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F
146	한림대학교	C
147	한서대학교	D
148	한성대학교	C
149	한신대학교	E
150	한양대학교	B
151	한양여자대학교	F
152	협성대학교	F
153	호남대학교	C
154	호서대학교	B
155	홍익대학교	E

* '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라. 최종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11.18~12.05)

□ 대학에 간접비고시비율 최종결과(안) 통보 : '25.11.18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목적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기관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범위 : 이의신청 범위는 2023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및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이의신청 소명 및 심의 세부 시간

- 대학소명(10분), 심의위원과 대학간 질의·답변(10분), 심의의결서 작성(10분)

이의신청 대학	소명 및 심의시간
심의위원회 사전 회의, 위원장 호선 등	10:00~10:30
우송대학교	10:30~11:00('25. 11. 28)
대구대학교	11:00~11:30('25. 11. 28)
경일대학교	11:30~12:00('25. 11. 28)
국립암센터대학원대학교	11:30~12:00('25. 12. 05)

○ 위원장 호선 및 진행 : 심의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및 심의의결서 작성

○ 이의신청 신청 대학 : 4개 대학

연번	대학명	이의신청사유
1	우송대학교	1) 크림스(KRIMS) 시스템상 전년도 연구비수혜실적은 당해연도 4.1일 기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집계함에 따라, 당해연도 4.1일 이전 퇴직한 전임교원의 실적은 집계되지 않아 국가R&D실적이 10억원 미만으로 산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실적도 포함된 국가R&D실적으로 인정 요청
2	대구대학교	1) 최초 자료 제출(06.30.) 시 02. 사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자) 지급액(4,438,640원)과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연구개발능률성과급 템플릿 작성액 예산(125,487,320원)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소명의견을 미 제출하여 이에 대한 인정을 요청
3	경일대학교	1) 연구수익 조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기준상 R&D과제로 판단되는 과제는 인정 요청 2) 미화용역비, KIU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인정 요청
4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암센터에 포함된 조직인 대학원대학교의 학교회계 비용 인정 요청 2)그룹웨어 사용분 인정 요청

□ 이의신청 심의

○ 일시 : 2025. 11. 28(금)/ 2025. 12. 05(금), 기관당 30분

○ 장소 : 서울 회의센터 23층 대회의실 /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소회의실A

□ 심의방법

○ 이의신청 사유, 소명 내용 및 증명자료 제시 등 설명 (기관당 10분)

○ 이의신청심의위원과 이의신청기관 담당자간 질의·응답 등 (20분)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기관에 통보 ('25.12.01, '25.12.08)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 산출대학 현황

〈표 3-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구분	산출대상	원가산출	비 고
’21년	164개	159개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 3개 대학, 간접비 산출 미신청 대학 1개 및 통합대학 1개 제외
’23년	161개	152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 8개 대학*, 간접비 산출 미신청 대학 1개(신한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극동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성결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평택대학교, 홍익대학교
’25년	155개	144개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50점 미만 11개 대학*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위덕대학교, 인덕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평택대학교

□ 산출결과

○ (소위원회 검증 결과) ’25년 간접비고시비율 평균은 **21.88%로, ’23년** 22.30% **대비 0.42%p 감소**

〈표 3-3〉 ’23년도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구분	’23년 평균 (A, %)	’25년 평균 (B, %)	증감 (B△A, %p)
평균 비율 및 증감 (144개 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50점 미만 11개 대학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	22.30	21.88	**△0.42**

□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변동 추이

○ ’1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고시하였으며, ’16년은 일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수정 고시하였음

구분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9	2021	2023	2025
간접비고시비율 평균(%)	19.76	18.23	18.18	25.89	26.14	24.31	24.73	25.52	22.30	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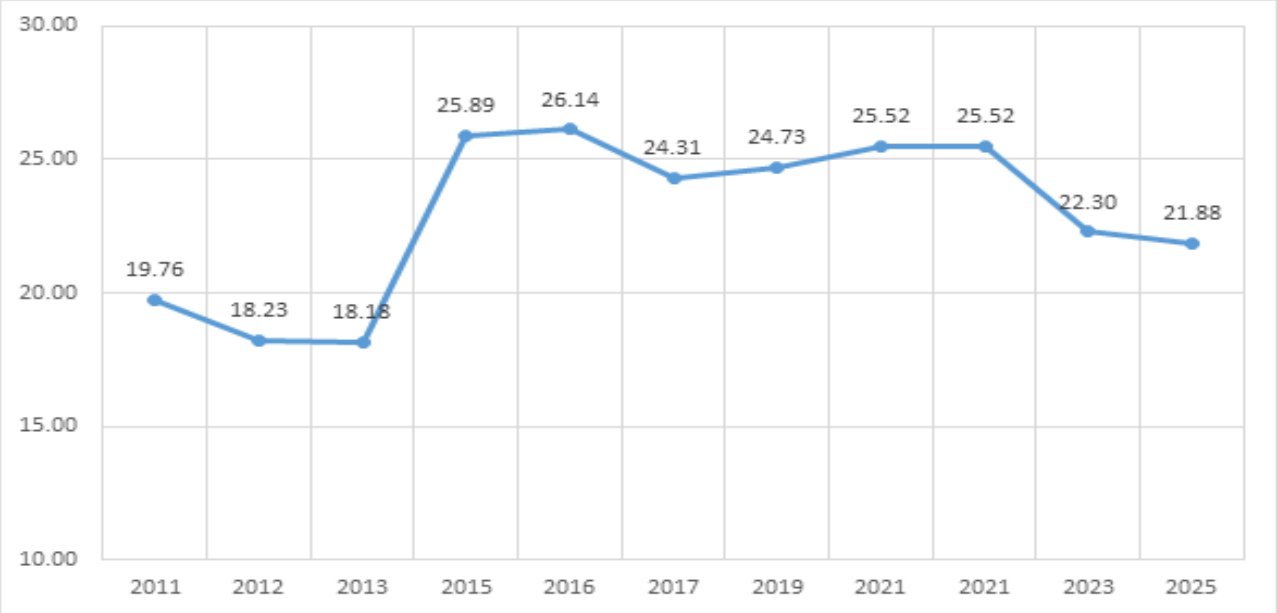

[그림 3-2] 평균 간접비고시비율 변동 추이(’11~’25)

□ 대학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결과

〈표 3-4〉 2025년도 대학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단위: %p)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립부경대학교	21.04
2	가톨릭관동대학교	23.87	32	국립순천대학교	22.12
3	가톨릭대학교	21.15	33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7.20
4	강남대학교	12.79	34	국립창원대학교	24.33
5	강원대학교	20.20	35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4.23
6	건국대학교	27.04	36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89
7	건양대학교	28.35	37	국립한밭대학교	27.25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5	38	국민대학교	26.01
9	경기대학교	24.42	39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00
10	경남대학교	26.93	40	극동대학교	12.99
11	경북대학교	24.83	41	나사렛대학교	15.06
12	경상국립대학교	23.62	42	남부대학교	16.24
13	경성대학교	20.09	43	남서울대학교	25.24
14	경운대학교	7.30	44	단국대학교	25.31
15	경인교육대학교	12.61	45	대구가톨릭대학교	28.42
16	경일대학교	14.49	46	대구대학교	20.10
17	경희대학교	26.43	47	대구한의대학교	26.17
18	계명대학교	22.78	48	대전대학교	24.70
19	고려대학교	24.34	49	대진대학교	22.85
20	고신대학교	29.00	50	덕성여자대학교	25.19
21	광운대학교	25.70	51	동국대학교	23.75
22	광주대학교	17.31	52	동덕여자대학교	22.67
23	광주여자대학교	7.39	53	동명대학교	28.42
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1.95	54	동서대학교	27.84
25	국립경국대학교	25.55	55	동신대학교	20.13
26	국립공주대학교	29.87	56	동아대학교	25.25
27	국립군산대학교	17.84	57	동양대학교	7.91
28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7.45	58	동양미래대학교	5.00
29	국립목포대학교	17.92	59	동의대학교	24.45
30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2.66	60	명지대학교	23.06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61	명지전문대학	5.00
62	목원대학교	17.55
63	배재대학교	26.69
64	백석대학교	13.87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7.16
66	부산대학교	18.46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3.25
68	부천대학교	21.56
69	북한대학원대학교	5.00
70	삼육대학교	25.82
71	상명대학교	27.89
72	상지대학교	27.44
73	서강대학교	27.87
74	서경대학교	16.49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8.00
76	서울교육대학교	12.82
77	서울대학교	27.01
78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0.00
79	서울시립대학교	27.97
80	서울여자대학교	29.70
81	서원대학교	20.58
82	서일대학교	5.00
83	선문대학교	26.64
84	성공회대학교	9.38
85	성균관대학교	26.30
86	성신여자대학교	25.20
87	세명대학교	16.70
88	세종대학교	25.77
89	수원대학교	29.87
90	숙명여자대학교	26.47
91	순천향대학교	23.86
92	숭실대학교	26.09
93	신라대학교	26.76
94	아주대학교	28.00
95	안양대학교	18.99
96	연세대학교	28.84
97	영남대학교	20.32
98	영산대학교	27.44
99	용인대학교	5.00
100	우석대학교	26.71
101	우송대학교	11.04
102	울산과학대학교	5.00
103	울산대학교	24.14
104	원광대학교	29.12
105	위덕대학교	5.00
106	육군사관학교	14.96
107	을지대학교	23.63
108	이화여자대학교	27.55
109	인덕대학교	5.00
110	인제대학교	21.88
111	인천대학교	30.90
112	인하공업전문대학	19.05
113	인하대학교	25.15
114	전남대학교	20.43
115	전북대학교	22.32
116	전주대학교	18.46
117	제주대학교	26.94
118	조선대학교	29.00
119	중부대학교	16.17
120	중앙대학교	22.21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고시비율(%)
121	중원대학교	30.07
122	차의과학대학교	28.84
123	창신대학교	29.40
124	청주대학교	17.24
125	춘천교육대학교	5.00
126	충남대학교	21.71
127	충북대학교	21.12
128	평택대학교	5.00
129	포항공과대학교	19.74
130	한경국립대학교	22.97
131	한국공학대학교	19.49
132	한국교원대학교	9.73
1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86
134	한국농수산대학교	13.65
13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81
136	한국예술종합학교	26.49
137	한국외국어대학교	25.87
138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36
13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46
140	한국체육대학교	15.51
141	한국항공대학교	25.10
142	한남대학교	20.65
143	한동대학교	26.32
144	한라대학교	15.38
14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04
146	한림대학교	21.16
147	한서대학교	22.78
148	한성대학교	15.30
149	한신대학교	12.72
150	한양대학교	23.36
151	한양여자대학교	13.97
152	협성대학교	16.19
153	호남대학교	17.27
154	호서대학교	25.79
155	홍익대학교	18.01

제 4 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마련



제1절 추진배경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와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의 증명자료 제출을 유예함('23.11.28)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와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증명자료 제출 적용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 시('25.1.9) 재차 유예를 요청함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와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를 명확히 하여 '27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적용('25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안건, '25.1)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의 연구지원 "**업무비중 및 한도**"설정과 "**근거자료의 종류와 범위**"세부내용 마련 필요

-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의 "**근거자료의 종류와 범위**" 세부내용 마련 필요

◇ 2025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안건, '25.1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
   - ① 연구지원 업무의 업무비중 및 한도, ②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 산출기준 의결 시 확정 예정
     *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과 대표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2.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 ①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 산출기준 의결 시 확정 예정
     *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과 대표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2절 추진경과

① ('23.7.12~21) : 2023년 대학 대면 검증 실시

② ('23.7.20) R&D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투입시간(타임리포트)** 등의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 다만,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편법에 따라"연구실적x직전 고시비율"을 인건비 인정한도로 적용 가능

③ ('23.8.8)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개인별 연간 전체 문서생성 목록을 분석하여 연구지원 문서 생성 목록을 별도로 산출, 연구지원 업무의 범위는 연구기획, 연구과제 협약 체결, 연구관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

④ ('23.9.26)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 중 **문서 "생성"만 인정되고, 단순 문서 "접수"는 불인정하고,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⑤ ('23.11.28) 개인별 연간 문서 생성 목록 제출 유예

⑥ ('24.2~8) 전문가 회의결과를 통한 인건비 분류 개선방안 마련

⑦ ('25.1.9) 전문가 회의결과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

⑧ ('25.1.17) 대학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문서 생성 목록 제출 재 유예 및 '27년 적용하기로 결정(산출위원회 회의)

⑨ ('25.6.13)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지원 업무 수행 비중과 한도, 연구지원 업무 수행 증명자료의 정의, 종류, 범위 등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⑩ ('25.12.)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기준 개선 연구 – 2027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표 4-1〉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마련 추진 경과

일자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단과대학 및 대학원 지원부서
'23.07.12~21	**2023년 대학 대면 검증**	
'23.07.20. 수정자료 제출	• R&D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투입시간(타임리포트 확인 필요) 등의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 **다만,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편법에 따라 "연구실적x직전 고시비율"을 인건비 인정 한도로 적용**	
'23.08.08. 수정자료 제출	•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생성 목록*) 제출하는 경우 인정 * 개인별 연간 전체 문서생성 목록을 분석하여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을 별도로 산출 –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으로 분류**	• 합리적인 근거자료(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개인별 연간 문서 생성 목록)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연구지원 업무의 범위는 연구기획, 연구과제 협약 체결, 연구관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임 –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불인정**
'23.09.26. 2023년 대학 대면 검증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되는 경우〉** • 개인별 연간 문서 생성 목록** **** 연구지원 문서 생성 목록만 제출한 경우** ※ 문서 "생성"만 인정되고, 단순 문서 "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관련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되는 경우〉** • 연구지원 문서생성 목록 미제출, 연구지원 업무 이외의 자료 제출, 교내연구비와 관련된 연구지원 업무자료 제출,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 등
'23.11.28. 중요 유예사항 안내	• (유예 후) 산출기준(1억 이상, 1억 미만, 연구비 없는 경우) 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교육지원부문 인건비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예 조치	• (유예 후) 산출기준(3억 이상, 5건 이상)에 부합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예 조치
'24. 전문가 회의결과	• '24년 전문가 회의결과 인건비 분류 방안 참조	좌동

<table>
<tr><th>일자</th><th>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th><th>단과대학 및 대학원 지원부서</th></tr>
<tr><td rowspan="2">’25.01.09.
관련 대학 의견수렴</td><td colspan="2">•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 인력 및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 기준은 유예하여 ’27년부터 적용</td></tr>
<tr><td><table><tr><td>’23년 산출기준</td><td>- 분류기준: 금액
- 증빙자료: 업무분장</td></tr><tr><td>’25년
산출기준(안)</td><td>- 분류기준: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무분장 + 생산문서</td></tr></table></td><td><table><tr><td>’23년 산출기준</td><td>- 분류기준: 금액, 과제 수
- 증빙자료: 업무분장</td></tr><tr><td>’25년
산출기준(안)</td><td>- 분류기준: 증빙자료
- 증빙자료: 업무분장 + 생산문서</td></tr></table></td></tr>
<tr><td>’25.01.17.
제1회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위원회 회의</td><td colspan="2">• 대학(산단) 부속연구기관 행정지원 인력 및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 마련 필요</td></tr>
<tr><td>’25.06.13.
대학 간접비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회의</td><td colspan="2">•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산출식을 수정하는 방안 모색
•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산출 방식 수정 방안 모색
• 추후 논의 필요</td></tr>
<tr><td>’25.12.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td><td colspan="2">• 인건비 산출 방식 개선방안 1, 2 제안</td></tr>
</table>

제3절 '24년 전문가 회의결과 인건비 분류방안 및 '25년도 산출기준(2025.01.)

1. '24년 전문가 회의결과 인건비 분류방안

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1안] 불인정

불인정 사유

○ 연구관리를 산단에서 중앙관리하고,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의 주요업무가 행정보조 성격이므로 불인정

□ [2안] 1인 인건비 인정

○ 대학(원) 행정실장은 교육·연구·행정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므로 행정실장 1인에 대해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하되, 업무효율 목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음

□ [3안] 국가R&D사업 연구지원 업무 증명서류 제출 시 추가 인건비 인정

○ 대학(원) 행정실장 1인 이외의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를 인정 받기 원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이 국가R&D사업 관련 공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시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 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연구지원 업무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참고자료

〈단대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수정 제출 후 인건비 현황('23.8.8)〉

○ 160개 대학 중 단대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가 0%인 대학이 113개

○ 47개 대학은 연간 문서생성목록 등 근거자료 제출 및 인건비 재 산정

- (평균) 연간 연구비의 4.5%, (최대) 29.1% (평택대). (최소) 0.1%(/대전대, 숙명여대)
- 연간연구비 대비 행정지원인력 인건비가 1% 이하인 대학(13개)*

* 경북대, 공주대, 국민대, 대전대, 덕성여대, 서울대, 선문대, 숙명여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충남대, 한남대, 한동대

나.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행정지원인력이 국가R&D사업 관련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제출 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 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연구비,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연구지원 업무 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부서의 업무분장 규정으로만 증명하는 경우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2. 2025년도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2025.01.)

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력이 연구지원 업무(업무비중 및 한도는 추후결정)를 수행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 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근거자료는 (안)이며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도 산출기준 의결시 확정 예정

○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지원 인력이 실제로 회계연도 중 연구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서명(날인)의 확인서 제출

나.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의 지원인력이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① 사무분장표, ②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 ①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지원 생성 및 승인 문서"만 인정 되고 "연구지원 단순접수(단순 전달도 포함)문서"는 불인정 되며, ② 교내 연구비, 지방자치단체연구비, 민간연구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실험/실습 관련 문서도 불인정

※ 근거자료는 (안)이며 근거자료의 종류 및 범위 관련 세부내용은 27년도 산출기준 의결시 확정 예정

○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이 실제로 회계연도 중 연구지원 업무에 참여했다는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서명(날인)의 확인서 제출

제4절 2027년도 대학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 개선안

1. 대학 간접비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결과(2025.06.13.)

가.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의 연구지원 업무 비중 및 한도, 증명 자료의 정의, 종류, 범위 등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연구지원인력 업무 증명의 비효율성 등으로 새로운 인건비 산출 방식 제안

○ 행정인력의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증명 자료 제출의 비효율성과 낮은 효과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

○ 새로운 방식은 ① 행정인력의 연구지원 업무 비중을 반영하고, ② 대학과 산출과정의 행정 부담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함

- ① 행정실장급 1인에 대하여 인건비를 인정하는 방안과 ② 단과대학 행정인력 인건비의 10%를 인정하는 방안 중 ② 방안을 중점으로 검토해보기로 함

※ 단, '10%' 등 구체적인 인정 비율은 '21, '22년 회계연도 대학 간접비 제출 자료를 시뮬레이션하여 추후 적정성에 대해 판단 필요

○ 따라서 공통지원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식을 수정하는 방안 모색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산출 변경(안)〉

$$\text{(기존) 공통지원부문} = \frac{\text{(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연구수익비율}}{\text{연간연구비}}$$

↓

$$\text{(변경안) 공통지원부문} = \frac{\text{(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단과대학 행정인력 인건비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연구수익비율} + \text{(단과대학 행정인력 인건비의 10\%)*}}{\text{연간연구비}}$$

* 단, 단과대학 행정인력 인건비의 10%는 '단과대학별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직접비) × 전년도 해당 대학 간접비고시비율'을 넘지 못함 (단과대학별 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직접비)는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해의 전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인력의 연구지원 근거자료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제안 의견

○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별 각 1, 2, 3안 제시

	전문가 및 실무자1	전문가 및 실무자2	전문가 및 실무자3	전문가 및 실무자4	전문가 및 실무자5	전문가 및 실무자6
1안	불인정 :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안	불인정	행정실장 1인 인정	모두 인정	'연구실적×간접비 고시비율'을 한도로 실지출 인건비 인정	현재와 같이 인정
2안	1인 인건비 인정 : 차선책으로 수용 가능	1인 행정원 인정	행정실장 1인 인정+국가R&D 공통업무수행 증명서류 제출 시 추가 인정	증빙서류 제출 시 공통부문으로 인정	연구실적 30억원당 1인 인건비(실지출 또는 정액) 인정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하는 분류 기준을 조정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 (현행: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5건 & 연간연구비 총액 3억원 기준으로 분류)
3안	국가R&D사업 연구지원 업무 증명서류 제출 시 추가 인건비 인정 : 반대	국가R&D사업 연구지원 업무 증명서류 제출 시 추가 인건비 인정			1인 인건비를 인정+ 연구실적 30억 이상인 경우 2인 인건비 인정	

나.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의 증명 자료의 정의, 종류, 범위 등

□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 업무 증명의 비효율성 등으로 새로운 인건비 산출 방식 제안

○ 행정인력의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증명 자료 제출의 비효율성과 낮은 효과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

○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의 업무는 대부분 연구지원업무이지만, 당해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사업 또는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업무의 비중를 식별하여 지원함

○ 부속 연구기관 등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금액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업무의 비중을 반영하여 인정하는 새로운 산출 방법 제시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정 인건비 산출(안)〉

$$\text{인건비 인정 금액 (부속 연구기관 등 연구지원 인력)} = \text{부속 연구기관 지원인력 인건비} \times \frac{\text{부속 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text{부속연구기관 총 연구비*}}$$

* 단, 부속연구기관별 지원인력 인건비 인정 금액은 '부속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간접비'를 넘지 못함 (부속연구기관의 총 연구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해의 전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함)

□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 연구지원 근거자료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제안 의견

○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별 각 1, 2, 3안 제시

	전문가 및 실무자1	전문가 및 실무자2	전문가 및 실무자3	전문가 및 실무자4	전문가 및 실무자5	전문가 및 실무자6
1안	불인정 : 반대	국가R&D 연간연구비의 간접비 내역 제출		불필요	사무분장표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 부문으로 분류하는 기준(국가R&D실적)을 조정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
2안	1인 인건비 인정 :차선책으로 수용 가능	업무분장, 국가R&D 과제 리스트, 연간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 처리 건수 및 대표 서류, 연구업무 처리 범위 및 해당 업무처리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		대표 생성문서 사본 제출(개인별 1개)(기안서 및 청구서)	사무분장표 및 근로계약서(또는 채용공고문)	대학부설연구소 대상 국가R&D지원사업 및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수행 기관에 소속된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에 대해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
3안	국가R&D사업 연구지원 업무 증명서류 제출 시 추가 인건비 인정 :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간편한 적용이 필요	사무분장표, 개인별 대표생산문서목록 * 및 대표 생산문서 사본(개인별 1건) 제출			없음	

2.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2025.12.)[1)]

□ 인건비 산정기준 개선 방향

○ 현재 간접비 제도에서의 불필요한 검증자료 지양 및 대학의 운영방식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표를 현실화함으로써 대학의 피평가 피로도를 개선할 수 있음

○ 인건비 개선의 방향성; 산학협력단 인건비에 대해 기존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수반되지 않는 단서 조항의 남용은 지양되어야 함

-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요구하는 '개인별 타임리포트' 또는 '연간 문서생성목록'은 대학의 실질적인 활동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검증기준이므로, 입증서류 개선 필요

  • 대학정보공시 상 산학협력단 인력으로 확인되고, 실 발생한 인건비가 중복 계상 없이 적정하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연구지원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함

  •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연금, 원천징수 등)를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 필요

- 인건비 산출 시 과도한 증빙없이 대학의 간접비 실사율 산정에 합리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한 간편법(한도설정 방식) 2안으로 평가방식 개선

  • 간편법은 행정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아래 표는 A 대학의 2021년도 및 2024년도까지의 간접비 실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간편법을 적용하였을 때 실사율의 변동 양상을 보여줌

〈표 4-2〉 간편법(한도설정 방식) 적용에 따른 간접비 실사율 변동 양상

회계연도	실사율	간편법(한도설정) 적용 시 실사율	감률
2021	23.07%	22.43%	-0.64%p
2022	24.11%	23.65%	-0.46%p
2023 평균 실사율	**23.59%**	**23.04%**	**-0.55%p**
2023	26.17%	25.39%	-0.78%p
2024	27.85%	26.76%	-1.09%p
2025 평균 실사율	**27.01%**	**26.08%**	**-0.94%p**

1)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2025),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기준 개선 연구 – 2027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 p.42.

□ 인건비 산출방식 개선방안 제안

○ 1안) 2025년도 현행 방식

- 단과대학 및 부속 연구기관의 인건비는 기존처럼 사무분장표만으로 인정
- 다만, 인건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과도한 인건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

○ 2안) 간편법 (한도설정 방식) 도입

-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정책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한도를 설정
  • 예시; 2023년 산출 시 예비 적용한 단과대학별 '연구실적 × 간접비 고시비율'을 한도로 활용
- 기존 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과다 인정 방지를 위한 조절 장치로 활용 가능

3. 의견 종합 결론

○ 연구지원 업무 증명 자료 제출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실질적 효과성 또한 낮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인식이 형성됨

○ 단과대학 및 대학원, 대학 및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 근거자료 기준(안) 검토 결과 향후 아래 대안 사항과 추가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 필요

- 1안) 기존 방식 준수 및 사무분장표 제출
- 2안) 간편법(연구실적 x 직전 간접비 고시비율) 한도 설정
- 3안) 인건비 산출식 수정
- 그 외 추가적인 대안

○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인력과 산학협력단 및 대학 부속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 방식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대학 간접비 실무 담당자,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됨

제 5 장

결 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산출기준 및 작성지침의 사전 확정 및 내용 명확화 필요

- 대학 및 출연(연)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당해연도에 산출기준이나 작성지침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2년전에 대학 또는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가 필요

- 사전에 알려 주시 않고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발생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 기준 마련 및 대학에 사전 통보 필요

- 2027년에 적용하기로 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분류를 위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여 대학에 사전통보 필요

- 2027년에 적용하기로 한 대학(산단) 부속 연구기관(연구소) 행정인력 인건비 분류를 위한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여 대학에 사전 통보 필요

○ 2026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및 기초자료 작성지침 개정 필요

-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통보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산출기준과 기초자료 작성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붙 임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Q&A



붙임.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템플릿 기준)

(2025.03.13. ~ 2025.06.26. 제도혁신센터)

[0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질의	답변
1〉 8-1-1 연구비수혜실적 탬필릿에서 연구수익에서 조정하는 금액을 산출 후에, 해당 금액을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상에 "차감" 하고 동일한 금액을 2-2-2 교육수익 산출내역에 "가산"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현재 2-2-1 탬플릿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2-2-2 탬플릿 가산)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해당액 으로 되어있는데 2-2-2 탬플릿 가산)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해당액 표현이 혼동스럽습니다 2-2-2 탬플릿 교육수익에 더하는 가산항목이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1. 템플릿 2-2-2 내 “가산)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해당액”은 템플릿 8-1-2 (1) 총연구비 조정 총괄표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업로드할 예정이며, 안내사항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기존) 가산)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해당액 → (수정 후)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2〉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세부산출내역에서 [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있는 R&D계수]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이 "50%"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지난 2023 대면실사시 50%이 아닌 0%로 조정하라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분류시도 0%가 맞는 것인지요? 안내주시면 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2. 대학혁신지원사업은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은 기초자료 작성지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이며, 2023회계연도에만 R&D계수 적용사업이 있고,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0%가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124p 참고) **수정 템플릿 업로드 완료(유첨 파일 참조)**
지난 질의사항 답면에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속 적용사업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탬플릿2-2호 서식 작성시,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부분을 2024회계연도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되는 것일까요?	ㅇ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이 없으므로 산출양식 2-2호 서식 작성 시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십시오.

질의	답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하여, [1-2호서식] 중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에 아래 사진처럼 적용사업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된 적용사업 외 빈칸에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R&D계수 적용사업에는 템플릿 내 작성되어 있는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 미래기반 조성사업'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 외 사업은 R&D 계수 적용 사업은 없습니다.
간접비고시비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문의 드립니다. K2Base 간접비 Q&A게시판을 통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이 없으므로 산출양식 2-2호 서식 작성 시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등은 공란으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1-1.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연간연구비 부분에서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비목 대한 자산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하도록 나와 있는데 자산화하는 금액에 R&D계수(예: 0.5, 0.25등)를 적용해서 연간연구비에 포함하라는 말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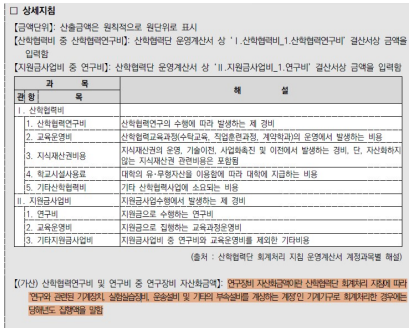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Ⅰ.산학협력비_1.산학협력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Ⅱ.지원금사업비_1.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목 / 해설 Ⅰ.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2. 교육운영비 —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지식재산권비용 —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4. 학교시설사용료 —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Ⅱ. 지원금사업비 —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2. 교육운영비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가산)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이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계상하는 계정인 기계기구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집행액을 말함	1-1. R&D계수 적용사업에서 연구비 자산화 금액이 있다면 자산화 금액에 연구수익으로 배분되는 R&D계수(예: 0.5, 0.25 등)를 적용해서 연간연구비에 포함합니다.
1-2. 2024년도가 적용사업이 없다면 2024년도에서는 R&D 자산화 금액도 연간연구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R&D적용사업 무시하고 연구비 비목으로만 보고 처리하면 될까요?	1-2. 2024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이 없기 때문에 2024년 자산화금액에는 R&D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답변
[5] 연간연구비 (⑦)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 (정의)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상 연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 연구비 비목에서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연구장비 자산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연간연구비는 개별 대학이 지출한 연간 연구비 총액 기입(간접비사업비 제외) 작성지침 및 해설서 P89.에 따르면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은 기계기구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K2Base 간접비 Q&A 2025. 5. 9. 백승현 작성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이미지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설서와 답변 내용으로 정확한 기입 내용 확인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기계기구 외에도 기입할 수는 있지만 인정여부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화상으로는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연구비목에 해당되는 기계기구 집행액만 기입하라는 뜻이 아닌 걸까요?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입자료와 인정범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김다빈 (dbkim) 2025.05.19 13:46 3927 안녕하세요. KISTEP 김다빈 연구원입니다. 연구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에 기계기구만 기입할 수도 있고, 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식재산권 등도 기입할 수 있으나, 계정과목별(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식재산권 등)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지침 및 해설에 따르면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에 대하여"기계기구로 회계처리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기구만을 기입할 수도 있지만, 자산화된 연구비를 타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기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R&D계수 관련입니다. 산학연혁력고도화지원사업에 국비는 교육운영수익으로 결산서에 잡았으며 산학협력단 간접비 수익인식 또한 하여서 50% 계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의 대응자금이 있습니다.(지자체 및 산업체) 결산서에 교육운영수익이 아니라, 연구수익으로 인식 하였다면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에 해당 연구비를 입력 후 50% 로 하면 되는건가요?	ㅇ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의 대응자금을 연구수익으로 인식하였다면,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에 해당 연구비를 입력하고, 50%를 적용하면 됩니다.
R&D계수 적용사업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수적용사업이 없다 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 대학 해당하는사업이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인데 1) 이 두 사업 모두 24년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에 해당이 없는것인지..	1. 대학혁신지원,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마이스터대 제원,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학교기업지원사업은 2024회계연도부터 일반재정으로 이관되어 R&D계수 적용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질의	답변
2) 해당이 없다면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유선상으로는 24년도에는 R&D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으로인하여 제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상 내용으로는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에 LINC+사업명이 작성이 되어있는데 3) 이 사업들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사업으로 확인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침내용 일부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0.5),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0.5), 대학혁신지원사업(0.5),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0.5),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0.25),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사업(0.25), 마이스터대 지원사업(0.2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_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2. 해당 R&D 재원이 일반재정으로 이관되어 R&D계수 적용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 해당사업들은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한 "SW중심대학사업"이 R&D사업인지 비R&D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며 통합Ezbaro 연구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SW중심대학사업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한 사업이나 해당 사업의 성격상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예외인 인력양성사업(교육사업)이므로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시에는 연구수익이 아닌 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어야 하며, 만약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으로 판단하여 연구수익에서 차감합니다.
저희(국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분리된 본부기관 연구진흥과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업무였었고, 내용도 연구지원에 해당됩니다. 도서관, 시설과, 재무과 같이 공통지원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ㅇ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는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이고, 그 외 부서는 공통지원부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 소속 산단 전담인력이 대학 업무를 겸직할 경우 교육지원부문으로 인건비 분류해야하나요?	ㅇ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의 인건비 분류는 해당 직원의 소속 및 업무, 대학의 국가 R&D 연간 연구비 및 연간 과제수 등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ㅇ 업무 전담 및 겸직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대학 소속 직원 중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질의	답변
	- 다만 연구지원업무 외 업무 또는 겸직인 경우에는 공통지원 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인건비가 분류됩니다. - 업무분장에서 교내연구비 관리와 연구지원업무(국가R&D 실적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되며,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기초지침 12~15쪽 참조).
'운영계산서 상 수익과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인정으로 처리(해당사항으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운영계산서 상 수익과목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2-2-1, 2-2-2 템플릿의 정보공시 차감, 가산 항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본교의 경우 수익과목이 제대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으로 인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되지 않은 교내 연구비까지 차감, 가산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져 문의드립니다.	ㅇ 운영계산서상 수익과목이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과 해설'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었다면,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과 2-2-2 교육수익 산출내역 상 정보공시 차감(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가산(교육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해당액) 항목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1-2호서식 연구수익산출내역_산학협력단회계에서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수익 해당액은 차감하고 교육수익으로 가산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호서식 1-7 연간연구비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계정과목명은 없습니다. 차감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ㅇ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으로 재분류하더라도 1-7(2-7)의 연간연구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산재보험료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상 과목이없어, 대학별로 다르게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대학같은 경우 "기관공통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02. 국립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1차 제출)" 1-3. 산학협력단 운영관리운영비에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Q1. 기관공통비용에 학생산재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데, 양식 작성시에는 "기관공통비용(결산서금액)"에서 산재보험만큼 제외를 시켜야하나요? Q2. "학생산재보험료"는 결산서상 금액이 0인데, 기관공통비용에서 제외한금액을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3. 온라인설명회 Q&A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 학생산재보험료는 금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서만 기관공통비용으로 지출시에도 인정됩니다.

질의	답변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 학생산재보험료는 금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서만 기관공통비용으로 지출 시 인정됩니다. Q&A에 있는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는 딱 한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nA 250527-250603 상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에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항목 분류를 추가하여 주셨는데, 이 변경 사항을 총괄표인 0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양식을 수정할 수는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0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에 동일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2번 서식(국립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양식) 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 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문의드립니다.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상 공통지원부문에는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이 추가되어 템플렛이 수정되었는데요(06.05.) 2번 서식 상 1-1-2 상 공통지원부문에는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문의〉 1. 임의로 셀을 추가해서 입력해도되는지? 2. '산학협력산 소속 대학 파견직원' 칸에 입력해도 되는지?	ㅇ 0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에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04. 학교회계운영계산서]

구분	질의	답변
템플릿 수정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과 전입액 부분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그냥 빼고 넣으면 되나요? 운영계산서 총액이 달라져서요.	ㅇ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템플릿에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업로드할 예정이며, 안내사항을 재공지하겠습니다. **수정 템플릿 업로드 완료(유첨 파일 참조)**
수식 문의	○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작성 서식 중 "04.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서식 문의 작성 시 임의로 수식을 수정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서식(수식) 상의 문제가 있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가. "운영비용총계" 의 수식 문제 - 서식에 적용된 수식 : 운영비용총계 = 운영비용합계 + 기본금대체액합계 + 운영차액대체액 + 당기운영차액 - 상위법령상 적용 수식: 운영비용총계 = 운영비용합계 + 기본금대체액합계 - 운영차액대체액 + 당기운영차액 ※ 운영차액대체액은 차감(-)하여야 하나 서식 상 수식이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관련 증빙자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관련 내용 발췌본 1부.	ㅇ 첨부한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내부거래 제거액이 결산서상 운영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양식에 따라서 템플릿양식을 수정하여 반영합니다. ※ 참고로 템플릿 양식 내의 수식은 결산서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함

구분	질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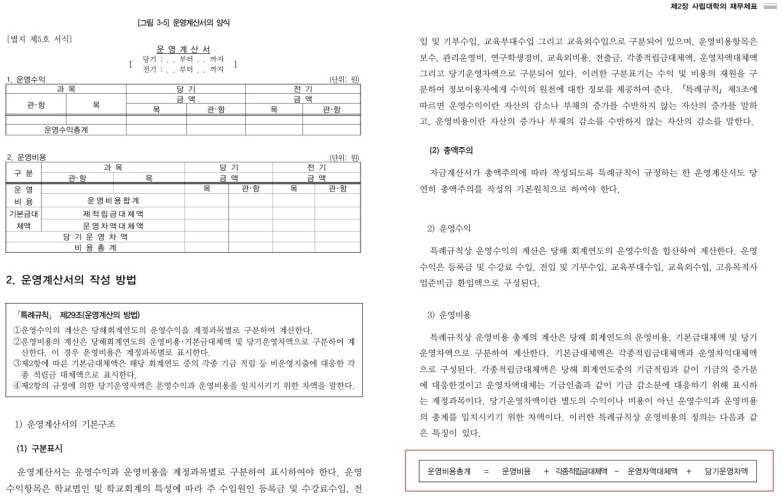

[그림 3-5] 운영계산서의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운 영 계 산 서

[당기 : . . 부터 . . 까지
전기 : . . 부터 . . 까지]

1. 운영수익 (단위: 원)

과목		당기 금액		전기 금액	
관·항	목	목	관·항	목	관·항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단위: 원)

구분	과목		당기 금액		전기 금액	
	관·항	목	목	관·항	목	관·항
운영						
비용	운영비용합계					
기본금대	체적립금대체액					
체액	운영차액대체액					
당기운영차액						
비용총계						

2. 운영계산서의 작성 방법

「특례규칙」 제23조(운영계산의 방법)

①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1) 운영계산서의 기본구조

(1) 구분표시

운영계산서는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운영수익항목은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의 특성에 따라 주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전

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그리고 교육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영비용항목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각종적립금대체액, 운영차액대체액 그리고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표기는 수익 및 비용의 재원을 구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수익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특례규칙」 제3조에 따르면 운영수익이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를 말하고, 운영비용이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2) 총액주의

자금계산서가 총액주의에 따라 작성되도록 특례규칙이 규정하는 한 운영계산서도 당연히 총액주의를 작성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영수익

특례규칙상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운영수익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으로 구성된다.

3) 운영비용

특례규칙상 운영비용 총계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 기본금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기본금대체액은 각종적립금대체액과 운영차익대체액으로 구성된다. 각종적립금대체액은 당해 회계연도중의 기금적립과 같이 기금의 증가분에 대응한것이고 운영차액대체는 기금인출과 같이 기금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당기운영차액이란 별도의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총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이다. 이러한 특례규칙상 운영비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운영비용총계 = 운영비용 + 각종적립금대체액 − 운영차액대체액 + 당기운영차액

나.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내부거래 제거액 반영 문제

- 서식에는 교비회계 합계가 단순히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 로 수식이 반영되어 있음
- 상위법령 상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합산액을 산출할 때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식에는 차감이 안되어 실제 공시된 교비회계 결산값과 달라짐

* 관련 증빙자료: 교비회계 결산서의 운영계산서 양식 1부.

교 비 회 계 운 영 계 산 서

(당기 :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전기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 운 영 수 익

(단위 : 원)

과목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제거)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관. 항	목				당 기	전 기
5100 등록금수입		12,515,031,930	1,080,884,670	0	13,595,916,600	13,965,738,308
5110 등록금수입		12,515,031,930	0	0	12,515,031,930	13,079,137,888
	5111 학부입학금	0			0	0
	5112 대학원입학금	0			0	0
	5113 학부수업료	10,351,911,930			10,351,911,930	11,207,855,388
	5114 대학원수업료	2,163,120,000			2,163,120,000	1,871,282,500
5120 수강료수입		0	1,080,884,670	0	1,080,884,670	886,600,420
	5121 단기수강료	0	1,080,884,670		1,080,884,670	886,600,420
5200 전입금 및 기부수입		0	14,586,233,938	1,300,000,000	13,286,233,938	11,792,764,365
5210 전입금수입		0	2,419,803,600	1,300,000,000	1,119,803,600	1,060,157,470
	5211 경상비전입금	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5212 법정부담전입금	0	819,803,600		819,803,600	760,157,470
	5213 자산전입금	0	0		0	0

내부거래 제거를 통해 교비회계 합계액이 감소됨

구분	질의	답변
수식 문의	4-2. 학교회계 운영계산서(통합) 자료를 입력해보니 운영수익총계와 운영비용 총계 불일치가 있어 각 셀의 계산식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질의합니다. I128셀과 O128셀 계산식 누락 H143셀과 J143셀, N143셀과 P143셀 계산 오류 I149셀과 O149셀 계산식 누락 I150셀과 O150셀 계산식 누락 I163셀과 O163셀 계산식 누락 I167셀과 O167셀 계산식 누락	ㅇ 첨부한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내부거래 제거액이 결산서상 운영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양식에 따라서 템플릿양식을 수정하여 반영합니다. ※ 참고로 템플릿 양식 내의 수식은 결산서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함
수식 문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자료 작성중 운영계산서 템플릿(04번, 14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메일드렸습니다. 5/14로 수정 게시된 운영계산서 템플릿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과 전입액이 추가된 것 확인하였는데요, 추가는 되었으나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과 전입액은 운영수익합계와 운영비용합계 수식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럼 결산서 총계와 금액이 맞지않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과 전입액도 합계에 포함되게 수식을 수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산서와 합계는 다르지만 현재 템플릿 수식대로 작성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 첨부한 04.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표준템플릿 양식 내 엑셀수식은 개별 대학 결산서에 따라 적절히 수정 가능합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지출내역서	제가 알고 있기론 산학협력단의 학교회계전출금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으로 전출하는 금액인데, 지출내역서에는 사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출금을 받은 후 별다를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출내역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ㅇ 학교회계전출금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학교회계전출금을 사용했다면, 지출용도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인정 여부	▶ 지원구분: 정부 ▶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과목: 지원금-연구수익 또는 산학협력-연구수익 ▶ 연구관리시스템: 통합이지바로 & 통합rcms 이 아닐 경우 전부 불인정 인가요?, e나라도움 불인정 인가요?	ㅇ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은 통합이지바로과 통합RCMS 시스템에 없는 경우 대면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은 각 기관의 연구과제 소명결과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입력화면을 보면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교비회계 이렇게 되어있고 교비회계=등록금+비등록금으로 식이 되어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 교비회계간 내부거래가 있어서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내부거래=교비회계로 처리되어 있다면, 교비회계 식을 수정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엑셀을 삽입(내부거래)해서 작성해야하나요?	ㅇ 내부거래는 엑셀을 삽입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부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운영계산서 아래에 설명해 주십시오.
작성법	어제 공지된 수정 템플릿 중 4-2.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중 '5200 전입 및 기부금수익', '5300 교육부대수입'의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관, 항이 수식 없이 0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수식을 임의로 입력하여 작성하면 되는것인가요?	ㅇ 각 항목에 대하여 합계 금액이 표시되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작성법	04-2.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중 비등록금회계의 운영차액대체/당기운영차액 금액을 입력하면 교비회계 합계금액에 서식이 없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ㅇ 교비회계운영계산서 내 목록 제목에 대한 수정은 삼가주시고,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내용에 맞추어 작성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대학에서 기존(21-22년도)에 작성하셨던 템플릿을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

구분	질의	답변
작성법	간접비 데이터 - 템플릿 04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템플릿 상에서는 기본금 계정과목이 3개인데, 학교 자체 운영계산서는 1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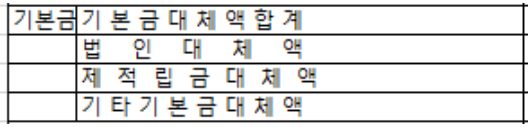 (템플릿04 기본금 계정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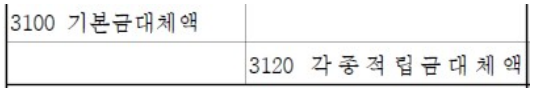 (학교 자체 운영계산서 기본금 계정과목) 이 경우, 템플릿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세 계정 중 하나에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정과목을 하나 더 추가해 넣어야 하나요.	○ 학교 자체 운영계산서 상의 “각종적립금 대체액”은 “제적립금 대체액”에 금액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정보공시내용]

구분	질의	답변
작성법	저희 대학은 창업지원단이 대학본부 소속으로, 창업관련 사업이 교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가 아닌 교비회계 재무상태표 상 국고/지자체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경우. 표준템플릿 8-1-2. 연구수익 조정 사항에서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 조정대상 여부를 "인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기에...) 또한, 창업지원단 사업(교비회계) 중,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이 통합 Ezbaro를 사용하더라도 국가 R&D 실적은 불인정 처리해야 할까요?	ㅇ 교비회계의 경우 인정으로 처리(해당사항으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ㅇ 창업지원단 사업 중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은 국가R&D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불인정처리하셔야 합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장학금 수혜혜택 및 부설연구소 등 8월 공시자료 관련 협조 요청드립니다. 대학 정보공시 각 항목별 본교 관련 부서에서는 7월에 자료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기한인 6월 30일까지는 24년도 공시자료 취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산출기준(안)의 가감률 기준에 따른 부실자료 제출에 해당하게 되는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부실자료 제출에 해당하지 않도록 기초자료 제출 후 차후 보완제출 드리는 방식으로 고려해주실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ㅇ 공시 예정자료와 실제 공시자료(마감일 이후 제출)의 오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간접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편 전년도 공시자료를 이용하거나 공시예정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8. 정보공시내용] 중 8월 공시 내용인 장학금 수혜혜택, 부설연구소 현황 등 자료를 확정지을 수 없어 6월 말 제출 이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한 경우 페널티 적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6 인하대학교 선생님 질의내용(8월 공시자료 관련)에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답변은 보았으나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걸까요?	ㅇ 공시 예정자료와 실제 공시자료(마감일 이후 제출)의 오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간접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편 전년도 공시자료를 이용하거나 공시예정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장학금 수혜혜택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관련 정보공시내용중 장학금 수혜혜택은 대학알리미(12-다.장학금 수혜 현황)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2024회계연도의 경우 올해 7월 통계조사후 8월 공시일정이라고 합니다. 6월말까지는 자료작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자료는 추후제출이 가능할런지요?	ㅇ 본교 장학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본 템플릿(08.정보공시내용)에 선 작성하신 후, 공시 내용에 따라 수정이 발생하였을 시, 대면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대학알리미 공시자료(KRIMS 포함)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는 8월 중 공시 일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기초자료 제출 기한이 6월 말인데 산출안을 작성하려면 각 부서에서 6월 중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한 일정인데 2024년도 공시 자료를 어떤 기준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ㅇ 본교 장학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본 템플릿(08.정보공시내용)에 선 작성하신 후, 공시 내용에 따라 수정이 발생하였을 시, 대면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표준탬플릿의 08. 정보공시내용의 8-3 장학금 수혜내역은 대학 알리미의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2024년 장학금 수혜 내역은 아직 공시 전이라 본교 장학팀에 문의하니, 해당 탬플릿처럼 보여지는 것은 자료를 공시하는 곳에 업로드하여야지만 나오는 것인데, 해당 시스템은 7월 중에 사용할 수 있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장학금 수혜 내역을 본 템플릿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우선 제출하고 공시 이후 제 재출하여도 될런지요?	ㅇ 본교 장학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본 템플릿(08.정보공시내용)에 선 작성하신 후, 공시 내용에 따라 수정이 발생하였을 시, 대면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다른 분들이 문의주신대로 8. 대학정보공시는 8월이 되어야 확정이 되고 2025년도 정보공시는 현재 조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시자료 미제출인 부실자료 제출이라. 최대한 자료 등록 후 제출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담당자에게 최대한 자료 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 후 공시자료를 엑셀파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ㅇ 최대한 자료 등록을 요청하신 후, 템플릿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공시 예정자료와 실제 공시자료(마감일 이후 제출)의 오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ㅇ 다만 최대한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간접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편 전년도 공시자료를 이용하거나 공시예정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1. 2024년도 자료중에 6월말까지 대학알리미 공시가 어려운 부분들은 최근연도 공시가 된 자료(2023회계연도 자료)를 활용해서 제출했다가, 추후 보완시에 2024년도 자료로 수정 제출이 가능할까요? 대학회계 자료들은 공시전에는 자료가 아직 완전히 취합이 안된 상태라서 활용하여 작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연구소 관련, 장학금 등)	ㅇ 최근연도 공시자료(2023회계연도 자료)를 활용해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도 공시 예정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ㅇ 공시 예정자료와 실제 공시자료(마감일 이후 제출)의 오차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간접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편 전년도 공시자료를 이용하거나 공시 예정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8번 항목과 관련하여 2023년 공시(2022년 기준 자료), 2024년 공시(2023년 기준 자료)가 아닌, 2023년 기준 자료, 2024년 기준 자료(금학년도 공시자료를 미리 수합/ 변경 건이 발생하는 경우 검증 때 정정)를 업로드해야 함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시는 기준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 고시비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년도/회계연도(3월 1일 ~ 익년 2월 28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 기준(1월~12월)에 따라 작성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대학 알리미(12-가. 연구비 수혜 실적)에 공시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정합성 및 패널티 여부	간접비 산출지침 상 장학금 수치를 활용하는 아래의 템플릿에서 정부공시자료가 아닌 교비회계로 실제 회계처리한 수치로 반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자료가 나오지 않은 2024회계연도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지, 2023, 2024 양 회계연도에 대해 교비회계로 실제 회계처리한 장학금 수치를 활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비회계 반영된 수치는 증명자료로 제출예정입니다. 〈장학금 수치 관련 템플릿〉	ㅇ 2023, 2024 양 회계연도에 대해 교비회계로 실제 회계처리한 장학금 수치를 활용 가능합니다. 이 때 작성시 주의사항은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모든 금액을 실제 회계처리한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분	질의	답변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 2-2호 서식 중 차감) 교내장학금 8-3. 장학금 수혜혜택 17.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내역 ==〉 17-1.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 회계연도 모두 실제 회계처리한 장학금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요? 본교의 경우 학부와 별개로 장학금 수혜해택을 대학원별(약 14개)로도 모두 개별공시하고 있어 이를 취합하기 위해 각 대학원별 담당자를 모두 컨택하여 확인해야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비회계에 반영된 실제 수치를 2회계연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정보공시 작성기준	2025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중 [8.정보공시내용] - [8-1-1.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의 작성 유의사항에 한국연구재단 크림스(KRIMS) 시스템 접속하여 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을 다운로드 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림스의 경우 수혜실적을 1.1~12.31 기준이어서 대학 회계연도와 상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대학 알리미(12-가. 연구비 수혜 실적)에 공시된 자료 산출을 위한 회계연도(1.1~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작성기준	연구비 수혜실적 및 인건비 내역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8-1 연구비수혜실적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이고 8-1-1은 크림스 실집계 내용으로 작성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23년 자료 관련하여 크림스에 입력한 내용에 누락된 것이 있음을 크림스 마감 완료 후 발견하여 정보공시를 정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8-1 연구비수혜실적은 정정분이 반영된 자료이며 8-1-1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은 반영되지 않은 분으로 조회가 됩니다.(크림스는 이후 변경분은 반영 안되는 걸로 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조회되는 대로 입력할지 조정해서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8-1-2 연구 수익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이 아닌 경우 용역은 전부 불인정으로 봐야 하나요?	1.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다만 8-1-1 템플릿에서 공시자료와 연구재단 제출 크림스 자료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역의 경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다면 불인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불인정의 개념은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입니다.

구분	질의	답변
정보공시 작성기준	8-1 연구비수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연구활동실태조사 당시 기입했던 2023년도 연구비수혜실적의 값이 일부 오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1) 크림스(KRIMS) 시스템상 연구비수혜실적 세부 집계내역 금액을 수정하고자 입력시스템(KRIMS)에 RAW 데이터를 수정 진행 중이며, 7월 14일(월) 16시에 데이터 확정될 예정입니다. KRIMS에 수정한 RAW데이터가 7월 14일에 확정되더라도 수정된 값을 8-1-1~8-1-3에 기입을 하면되는지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된 12-가 연구비수혜실적 또한 변경 요청 예정이나, 변경 절차 상 시일이 소요되어 자료 최종제출일인 6월 30일까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정보공시에 공시된 12-가 연구비수혜실적을 7월 말까지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된 값을 8-1에 기입하면되는지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리며, 수정이 예정되는 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자료(수정된 값, 차이가 나는 사유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리며, 수정이 예정되는 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자료(수정된 값, 차이가 나는 사유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작성기준	8-1-2 연구수익 조정 후 금액(인정금액)과 8-1-3 국가R&D실적금액이 같아야 하는건가요? 8-1-2 연구수익 금액 중 통합Ezbaro 및 통합RCMS을 통한 연구비가 아니어도 연구수익 인정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일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ㅇ 8-1-2 연구수익 조정 후 금액(인정금액)과 8-1-3 국가R&D실적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일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기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을 수정하여 재공시하였을 경우, 크림스에서는 집계일시 이후에 입력, 수정된 업적은 집계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연구비수혜실적과 크림스 연구비실적 집계세부내역조회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크림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8-1-1, 8-1-2, 8-1-3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 연구재단 운영 크림스(KRIMS)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내역으로 템플릿을 작성하시고, 연구비수혜실적과의 차이는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소명자료 제출	오류 사항 등 정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는 어떻게 보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각 불일치 내역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불일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소명자료, 설명자료를 산출자료 제출 시 함께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명자료, 설명자료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인력현황 작성	8-4 산학협력단 인력현황의 경우 대학알리미 12-자(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항목의 경우 2022년 삭제항목이더라구요..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을까요?	ㅇ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의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인력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익 조정금액	1. 8-1-2 연구수익 조정금액 불인정: 지원금수익-연구수익과, 산학협력수익-연구수익 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1. 국공립대학 연구수익이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및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상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를 말합니다 ㅇ 연구수익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이며, ㅇ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은 연구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불인정 됩니다. ㅇ 아울러, 운영계산서상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과,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재 양성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장학사업, 정부기관/지자체 공공사업, 지자체 대행용역 등은 연구수익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구수익 조정금액	8-1-2. 연구수익 조정 세부내역 (*) 연구수익 조정금액은 1-2-1(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차감)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기입하고 1-2-2(2-2-2) 교육수익 산출내역 "가산)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에 기입함 정보공시 내역 중에서 연구수익이 아닌 사업이 포함되어있지만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인정으로, 운영계산서상 운영수익과목이 연구수익이 아니나 연구수익으로 반영되었다면 불인정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ㅇ 템플릿의 목적은“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 해당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계산서상 수익과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인정으로 처리(해당사항으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구분	질의	답변
	안내사항에도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연구활동이 아닌 수익을 구분하라는 것 같아서요. 운영계산서상에 제대로 반영이 된 금액을 차감하고 가산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연구수익 조정금액	8-1-2 연구수익 조정 관련 1. 크림스 데이터 중 교내과제(교비재원)도 연구수익에 인정이 되나요? 2. 크림스 데이터 중 RCMS 연구과제인데 기타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 된 실적들이 있습니다. 연구수익으로 인정 되나요?	1. 연구재단 운영 크림스(KRIMS)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교내과제(교비재원)은 연구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기타지원금수익으로 회계처리된 실적은 연구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8-3. 장학금 수혜혜택 작성 관련 우리 대학의 특이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경상대학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하여 경상국립대학교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대학 정보공시 자료의 경우 기존 재학생들이 있어서, 공시를 경상국립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나누어 대학알리미에 공시가 되고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료도 모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복지대학원의 예시이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모두 동일한 전공에 재학생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료 포함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미포함 시 구체적인 의견이나 근거를 제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경상국립대학교는 문의사항에 적어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통합되었으며, 23년도 대학 간접비 산출에도 경상국립대학교의 간접비 산출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ㅇ 이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자료를 경상국립대학교와의 별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경상국립대학교 자료에 모두 포함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연도	본교/분교 구분	대학/대학원 구분	단과대학	학과	구분	학과특성	학기	재학생 (A)
							합계	69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국제식량안보학과	야간	일반과정	1	1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생명산업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1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아동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영어학과	야간	일반과정	1	3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한국자문화학과	야간	일반과정	1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환경공학과	야간	일반과정	1	5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국제식량안보학과	야간	일반과정	2	1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2	9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생명산업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2	4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아동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2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영어학과	야간	일반과정	2	2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한국자문화학과	야간	일반과정	2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상국립대)	환경공학과	야간	일반과정	2	6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남과기대)	녹색건설환경공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3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남과기대)	사회복지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1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남과기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2
2023	본교	특수대학원	산업복지대학원(경남과기대)	아동학전공	야간	일반과정	1	1

[09. 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구분	질의	답변
작성법	3. 인건비 관련으로는 9-1. 학교회계인건비는 및 10-1. 산학인건비는 결산일 기준 인원으로 보는게 맞는 건지요? 4. (9-1-1개인별 업무내역 및 10-1-1개인별 업무내역)과 (9-3 대학부설별 업무내역 및 10-3 산학부서별 업무)도 결산일 기준인원으로 보는게 맞는지 정보공시(4/1)기준으로 보는게 맞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4.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작성법	8-1. 연구비수혜실적, 9-7 및 10-7 연구소별 연구내역 관련입니다. 9-7과 10-7 연구소별 연구내역 작성중에 있으며 해당 템플릿에 '(2) 연구비 수혜실적 세부내역상의 연구비는 정보공시상의 연구비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침 상에는 통합Ezbaro와 통합RCMS을 통한 총연구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소별 연구내역 및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중 단과대학 인건비에 대한 연구비수혜실적 판단 시, 8-1-1. 연구비수혜실적(국가R&D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지 8-1-3. 국가R&D실적판단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표준템플릿 8-1-3 국가R&D실적판단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국가R&D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판단 및 인건비 산출내역에서 국가R&D 실적 판단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작성법	템플릿 8-3. 장학금 수혜혜택/ 17. 교내장학금및근로장학금 산정내역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료는 정보공시자료 입력 2024회계연도 자료는 실제회계처리한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3,24 양 회계연도에 대해 교비회계로 실제 회계처리한 장학금 수치를 활용가능하다는 답변은 보았습니다만, 연도별 정보공시자료와, 실제 회계처리한 수치를 활용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리며, 상이하시거나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ㅇ 2023회계연도 자료는 정보공시자료를 입력하고, 2024회계연도 자료는 실제회계처리한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	학교회계 인건비 산출 위에 공통지원인력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회계기간과 연말정산 자료가 상이하더라고 간편법 적용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인건비 산출하면 된다는 설명이 맞나요? 회계기간 : 2023.3.1 ~ 2024.2.28. 연말정산 자료 : 2023.1.1. ~2023.12.31.	ㅇ 학교회계 인원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산출 시,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2월 28일자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을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한 후에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질의	답변
대학직원 산학협력단 파견 인건비 학교회계 전출금	1. 사실관계 - 2023년 산출 당시, 대학직원 산학협력단 파견 인건비를 학교회계전출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2. 관련지침(20p) 3. 질의사항 (1) 아래의 2개의 안 중에서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안) 2023년 안내받은 사항(통화내용 보유) : 파견직 인건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학교회계전출금'로 회계처리 후, 교비회계에서 연구지원인력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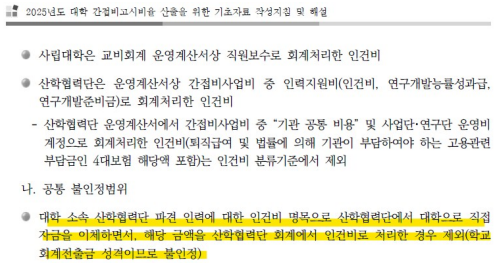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직원보수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산학협력단은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간접비사업비 중 "기관 공통 비용"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인건비(퇴직급여 및 법률에 의해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관련 부담금인 4대보험 해당액 포함)는 인건비 분류기준에서 제외 나. 공통 불인정범위 –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제외(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이므로 불인정) (2안) 지침: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 처리를 하고, 원가산출할 때만 불인정 항목으로 산출 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연구지원인력 산출 (2) 파견직 인건비에 대해서 '산단회계-간접비사입비-인력지원비-인건비' 계정 과목으로 계상을 한다면 파견직 인건비가 모두 불인정 되는건가요? (3) 만약, 안내받은 내용(1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대한 전출금액 부분[8-2. 학교회계전출금의 간접비 지출 합리성]이 수정 가능한지도 확인요청드립니다.	○ (1)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지침(p20)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안과 같이 처리해 주시 바랍니다. → (2)처럼 파견직 인건비에 대해서 '산단회계-간접비사입비-인력지원비-인건비' 계정과목으로 계상을 한다면 파견직 인건비가 모두 불인정입니다. ○ (1)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학교회계 인건비 산정여부	템플릿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 (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개인별) 에서 (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개인별) 의 해석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023년도에 신청 할 때는 9-1. 파일을 미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산출을 위해 해당부서에 자료 요청이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해당 인건비가 산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소속 인건비 산정여부	경북도립대학교 + 안동대학교 통합(국립경국대학교) 관련으로 경북도립대 원가 산출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문의 사항 전달 드립니다. 1. (학교소속) 경북도립대학교 대학소속 대학회계직, 파견 공무원(광역지자체) 인건비 산정여부? (부연설명: 대학회계 예산에서 인건비 집행)	1. 대학소속 직원이 산단파견직원인 경우 인건비는 연구지원업무의 전담 또는 겸직 여부에 따라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됩니다.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 지원인력에 경우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파견 공무원은 학교 혹은 산단에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부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중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부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본교의 경우, 최근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일부가 분리된 대학소속기관인 연구진흥실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는 대학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만을 전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신규 연구과제 발굴, 연구활성화위원회 운영, 연구홍보포털 관리 등) 이 경우 연구진흥실 직원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이 될까요? 이전 Q&A에는 공통지원부문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ㅇ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직원 및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대학 소속 직원 중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합니다. ㅇ 다만, 대학소속기관의 경우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는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이고, 그 외 부서는 공통지원부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질의	답변
R&D 실적 판단 및 연구지원 업무 분류기준	2025년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9-1] 학교회계 인건비 작성 시, [국가 R&D 실적판단] 기준을 통합 이지바로, RCMS를 사용하는 과제만 해당되는건지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앙부처 과제도 R&D 실적에 포함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대학 소속 산단 전담인력의 연구지원업무 중 교육운영사업 관리도 연구지원 업무로 분류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지원업무: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및 자산관리,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연구개발성과 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연구보안관리 업무를 말하며, 창업보육은 그 외의 지원업무로 구분함	1. 학교회계 인건비 작성 시 국가 R&D실적 판단 기준은 통합이지바로, 통합 RCMS 사용 과제만 해당 됩니다. 2. 연구지원 업무는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및 자산관리,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연구개발성과 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연구보안관리 업무를 말하며, 창업보육은 그 외의 지원업무로 구분'합니다. 문의하신 교육운영사업 관리는 교육지원 업무로 분류됩니다.
인건비 인정 여부	9-1. 학교회계 인건비 세부내역 1. 대상자 :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 2. 업 무 : 교내연구비, 연구윤리 〈연구윤리 업무 세부내역〉 ① 각종위원회 ② 연구윤리교육 ③ IRB심의 등 3. 질의사항 연구윤리 업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 IRB심의 승인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청구 가능 위원회 승인 후 실험 가능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이 교내연구비 관리와 연구지원 업무(국가 R&D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 연구지원업무는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및 자산관리,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연구개발성과 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연구보안관리 업무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지원업무로 구분합니다.
인건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공통지원부서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통지원부서 중 시설관리업무(환경미화)를 별도 용역비로 지출하지않고 학교에서 직고용하여 교비 임시직 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공통지원인건비로 분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환경미화 업무도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통지원부서인 중앙기기센터에 조교 1인이 근무하고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 조교인건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환경미화 업무는 "시설관리"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력의 업무 성격이 공통지원 부문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문의하신 중앙기기센터는 공통지원부문 인정 부서입니다. 다만 조교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질의	답변
인건비 인정 여부	9. 학교회계인건비 관련입니다. 구분: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입니다. 부서: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기획, 산학연계 관련, 교육운영,현장실습 등) 정보공시: 해당 담당자는 산학연계에 구분되어있음. 산학협력단 지원부서로 연구지원부문 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연구지원업무는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및 자산관리, 검수, 재무 및 회계, 감사, 연구개발성과 관리, 산업체 연계, 산학연계, 연구보안관리업무를 말하며, 창업보육은 연구지원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로 구분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경우 창업교육센터는 교육지원업무로 사료됩니다. ㅇ 업무분장에서 겸직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인건비로 분류되며,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산학협력단 내 업무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인건비 인정 여부	타 대학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올라왔지만 답변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질의드립니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지침(p18~)을 보면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의 정의는 교육부서 및 연구부서를 함께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예시부서로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관련 유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지침상 예시부서로 명시되어 있는 부서가 아닌 부서는 공통지원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답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사항에 따르면 예시부서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부서인 안전관리센터는 공통지원부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안전관리센터는 산출지침 상 공통지원부서의 정의에 맞는 교육부서 및 연구부서를 함께 지원하는 필수불가결한 공통지원부서로 생각됩니다. 간접비 산출시 연구실안전관리비(안전관리센터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비용)를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센터 인건비를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반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 공통지원부문으로 인정되는 부서는 작성지침 및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입니다. 그 외 부서에 대해서는 공통지원부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귀 대학에서 문의하신 안전관리센터에 대해서는 “2025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쟁점사항 작성 양식”을 작성·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구분	질의	답변
인건비 인정 여부	템플릿 양식 [9.학교회계 인건비 내역] 공통지원부문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1. 본교의 경우 이공계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교 아님) 이공계 캠퍼스의 통합지원팀 내에도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통지원부서로 인정 가능할까요? Q2. 본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팀'이 신설되었으며, 연구실 안전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열거된 부서(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는 아니지만 공통지원부서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전팀 수행 업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훈련, 안전교육 3.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및 개선 4. 안전 관리자 지정 및 보고 5.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6. 안전보건관련 현황보고 및 공시 7. 석면건축물 관리 등	1. 통합지원팀 업무분장 기준으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해당하는 직원은 공통지원부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명시된 부서에 한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가 인정됩니다.

구분	질의	답변
인건비 인정 여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산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가. 산출지침 : (공통 불인정범위)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제외(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이므로 불인정) (작성지침 p.21) 나. 체크리스트 (09.10 인건비) 중 (연구지원부문 해당부서 등 분류기준) - 지원인력인건비는 산단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인건비만 인정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업체(용역업체)에 소속된 파견 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성 경비를 불인정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제외(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이므로 불인정)하였는가? 2. 질의사항 : **가. 다른 대학의 최근 질의 사례를 살펴보니, 학교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직원을 교비회계와 정산하는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성격으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서 불인정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소속 : 대학 임용 · 발령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파견발령) · 담당업무 : 연구지원업무 수행 · 급여처리 방법 : 학교회계에서 개인에게 지급 후 반기 주기로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간접비사업비-인건비 과목으로 실제 발생액 정산 (*학교회계에서는 급여 회계처리 취소)	ㅇ 대학 임용 직원이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파견되어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개인에게 지급 후 반기 주기로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간접비사업비-인건비 과목으로 실제 발생액 정산하는 경우 - 학교회계-인건비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산출기준에 따라서 불인정 대상입니다.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pp.20 참조]** (나. 공통 불인정범위)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제외(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이므로 불인정)

구분	질의	답변
	(질의내용) (1) 해당 직원의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인정 여부 (2) 해당 직원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인정 여부 (3) 해당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지원부문의 산학협력단회계 및 학교회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면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체크리스트에 기재된대로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제외하는 것은 공통부문해당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 인지 여부 (5) 만일 위 직원의 인건비를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으로 인식하여야만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그러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학교 파견 산학협력단 근무 직원의 인건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사학진흥재단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보임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구분	질의	답변
작성법	산학협력보상금 템플릿 작성 문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산학협력보상금을 템플릿에 반영할 때 10-1. 산학 인건비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항목에 반영하고, 10-2. 결산서 대사검증에는 [기타] 항목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산학협력보상금을 템플릿에 반영할 때, 10-1. 산학 인건비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항목에 반영하고, 10-2. 결산서 대사검증에는 [기타] 항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작성법	붙임번호. 10번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96p를 보면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을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24년 4월 1일, 25년 4월 1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10번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의 10-1-1. 개인별 업무내역, 10-3. 산학부서별 업무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10-4. 공시자료 대사는 공시 현황(4월 1일기준)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3. 10-1 산학 인건비도 담당업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결산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업무 및 인원 기준을 2월 말 기준으로 해야 할지 4월 1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1.산학 인건비 템플릿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학알리미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내역을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2. 공시현황 그대로 작성 부탁드리며, 상이하시거나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립니다. 3. 결산일인 해당연도 2월말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나 소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겸직여부 인건비 분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지원인력으로 분류할 시 산학협력단 업무 외 겸직 시 겸직으로 있는 기간에 대해 제한이 있을까요? 산학협력단 업무 외 겸직기간이 1달이라도 있으면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로 분류가 안되고 공통지원 또는 교육지원으로 인건비를 분류를 해야하는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ㅇ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는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해당합니다. ㅇ 연구지원업무 외 업무 또는 겸직인 경우는 공통지원 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ㅇ 겸직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한 업무분장 등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기간 등에 따른 겸직여부 및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인정 여부는 대면검증 등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질의	답변
인건비 분류	문의 1) 인건비 분류 중 연구지원부문에서 연구지원업무 외 다른 업무를 공통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하라고 나와있는데, 템플릿 양식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 공통지원부문에는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파견직원,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재해야하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2) 산학협력단 자체임용 연구지원인력이(인사, 재무회계, 설비자산 운용) 통합 Ezbaro, RCMS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표준 템플릿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중 공통지원부문에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을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연구지원부분 인건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Ezbaro 및 RCMS 시스템 이용이 업무분장 상 연구지원업무 전담여부 판단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국가R&D 실적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인력의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지원업무 전담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방법에 따른 인건비 분류	10. 산학협력단 인건비 내역 〈해설서〉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외부업체(용역업체)에 소속된 파견인력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성 경비를 불인정 → 대학 소속 산단 파견인력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질의응답〉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자금 이체하면서, 해당 금액을 산단 회계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불인정 → 대학 소속자는 꼭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산단에서 처리하고 학교에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럼 산단회계에서는 대학 소속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에서는 무조건 불인정 사항인건지 공통지원부문으로는 인정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문의사항]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파견직원의 수당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 - 학교회계에서 지급되지 않음 - 산단회계에서 지급되었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전출형태가 아님)	ㅇ 대학 임용 직원이 산학협력단에 파견되어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 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간접비사업비-인건비 과목으로 실제 발생액을 정산하는 경우 - 학교회계-인건비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업무전담 여부에 따라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인정이 되고, 산단회계-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구분	질의	답변
창업보육 및 기타업무 인건비 분류	이번부터 창업보육과 기타 업무는 연구지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를 내야 하는데 이 자료상에 있는 창업보육과 기타 카테고리에 있는 인원은 전원 불인정일까요? 왜냐하면 저희 담당자가 위 자료를 제출할 때에 1. 창업보육 카테고리에 '예비창업패키지', '지자체 센터 위탁 운영 사업' 등 실제 창업보육을 하는 업무가 아닌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의 담당자들을 기재하였고(실제 창업보육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그대로 제외 할 것 입니다) 2. 재무 및 회계, 자산관리, 검수 등의 업무를 하는 인원을 기타 카테고리에 기재했기 때문입니다(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 상에 내용이 없어 기타 카테고리에 기재를 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 제출 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지원 업무로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를 보내드립니다	ㅇ 대학알리미 자료상 창업보육과 기타업무에 기재한 인원과 인원별 세부 업무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지원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연구지원부분 인건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Ezbaro 및 RCMS 시스템 이용이 업무분장 상 연구지원업무 전담여부 판단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국가R&D 실적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인력의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후 연구지원업무 전담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 및 기타업무 인건비 분류	2. (산단소속) 산단 자체 임용직원 인건비 재원은 경상북도 운영비 지원금이며, 간접비사업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세출(집행), 인건비 산정여부?(산학협력법 제39조, 동시행령 제49조의2 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산단소속) 산단 자체 임용직원의 학교 취창업지원센터 파견으로 지급된 인건비 포함여부? (재원은 경상북도 운영비)	2.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인건비는 간접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취창업지원센터 파견으로 지급된 연구지원부문 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능률성과급	10-5. 능률성과급 세부내역 의 국가R&D 연구능률성과급 한도 관련, (2) 국가R&D 연구능률성과급 한도 계산 항목의 "당해연도 전체 간접비수익"과 "당해연도 국가R&D 간접비수익"에 결산 부속명세서인 간접비수익명세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당해연도 전체 간접비수익"과 "당해연도 국가R&D 간접비수익"을 산출할 때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인"간접비수익"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내역]

구분	질의	답변
자산화 금액	11-11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작성중 총괄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지침 및 해설에는 당기 중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 중에서 자산화된 금액을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총괄표 작성시 현금흐름표와 동일하게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등 작성 후 당기 세부내역 작성시 현금흐름표에 포함된 자산을 모두 기입하고 간접비 취득여부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현금흐름표와 상관없이 총괄표 작성시 현금흐름표에서 간접비 재원으로 구입한 자산들의 금액을 추출하여 기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현금흐름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에 경우 하단에 추가 작성 부탁드립니다. → (1) 총괄표는 결산서상 유·무형자산 명세서(또는 주석)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2) 당기 증가액 세부내역 작성 시 당기증가액 합계는 총괄표상 당기증가액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당기증가액에 대해서 건별로 간접비 취득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 때 간접비로 취득한 자산의 당기증가액은 현금흐름표상 현금유출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산화 금액	간접비 재원으로 기계기구를 취득하였습니다.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기계기구도 산출양식에 추가하여 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원칙에 따라 세부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11-11. 자산화금액(원칙) 템플릿에는 계정과목에 관계 없이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있는 자산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며, 16-1에는 계정과목에 관계 없이 연구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자산화 금액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간편법) 16-2. 연구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간편법) 관련입니다.** 11-12. 템플릿은 간접비재원으로 취득한 자산내역을 작성하고 16-2. 템플릿은 연구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내역을 작성하는데 → 지침: (간편법)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포함된 당해년도 집기비품 취득지출액과 지식재산권 취득지출액을 기재 문의) 지침으로 보면 집기비품과 지식재산권 취득액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1번, 16번 템플릿 모두)	ㅇ 11, 16 템플릿 모두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질의	답변
학생 산재보험료	학생산재보험료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계정과목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학생산재보험료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계정과목이 없어 따로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계처리규칙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 장비구축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ㅇ 학생산재보험료가 기관공통비용 등 다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는 별도로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 표준 템플릿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학생산재 보험료	Q1. 11번 템플릿의 작성시 유의사항을 보면 운영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운영계산서상에는 학생산재보험료가 기관공통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유의사항대로 11-1. 기관공통비용에 넣고 11-5. 학생산재보험료 에는 0원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그러나 Q&A 답변 내용은 회계처리규칙과는 별도로 해설에 따라 분류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1-1.에는 제외하고 11-5.에 넣으면 될까요? 그럼 운영계산서와는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표준템플릿 작성방법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Q2. 금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서만 기관공통비용으로 지출 시 인정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유의사항에 운영계산서 작성기준대로 쓰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운영계산서와는 불일치할텐데요.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말하는 기준(운영계산서기준=회계처리규칙기준)과 Q&A 답변의 기준(회계처리규칙과는 별도,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이 충돌하여 여이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다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는 학생산재보험료에 대한 정의만 나와있고 템플릿의 작성에 대한 세부 해설이나 지침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ㅇ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학생산재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0원으로 기재합니다. - 더불어 학생산재보험료는 2025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경우 기관공통비용으로 지출시에도 인정되며 2027년 이후에는 학생산재보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권고드립니다.

구분	질의	답변
연구활동 지원금	탬플릿 11.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탭>연구활동지원>실험실 운영지원비 관련하여 인정되는 항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확인하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1. [붙임202025년도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p.169 참조 : 실험실운영지원비;: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관련 재료 및 전산소모품 2. 실험실운영지원비 내 전산처리관련 재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ㅇ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연구활동지원금 세목 예시(155p)에 따르면 실험실 운영지원비에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 관련 재료 및 전산소모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처리관련 재료도 인정됩니다.
건강검진비	탬플릿 11.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탭>연구실안전관리비>건강검진비 관련하여 인정되는 항목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니, 확인하신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연구실안전관리(건강검진비)의 인정여부가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서는 사용가능 한것으로 보이는데 탬플릿에서는 업무추진비성으로 불인정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건강검진비)가 인정 항목인지 불인정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 탬플릿(11-4, 연구실안전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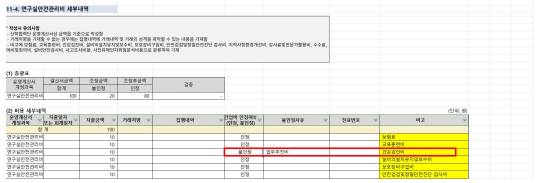	ㅇ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중 연구실안전관리비에는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비용인 건강검진비가 인정됩니다.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에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려주신 템플릿에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이 없고, 11-11.자산화금액(원칙)이 그래도 반영되어 있어 추가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ㅇ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한 템플릿은 없습니다. 11-11.자산화금액(원칙)의 양식에 자산화 관련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기초자료 제출목록을 보면 11-11번은 관리운영비 자산화 금액입니다. 체크리스트는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의 적정성 확인 항목이 있고, 11-12번이 관리운영비 자산화 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ㅇ (11-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적정성 확인**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계상된 항목의 비목 처리가 기초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되었는가? **ㅇ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의 적정성 확인**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으로 계상된 항목의 비목처리가 기초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되었는가?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ㅇ (11-12 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의 적정성 확인** 기초자료 제출목록과 체크리스트의 번호가 다른 점과 기술창업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항목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점이 혼란스럽습니다.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정의) 해당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정의)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건가요?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초자료 제출목록과 표준템플릿이 누락된건가요? 기초자료 제출목록과 작성지침 및 체크리스트의 번호가 다른 이유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한 내역 및 체크리스트 작성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11-1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템플릿은 없습니다. 11-11.자산화금액(원칙) 또는 11-12.자산화금액(간편법)의 양식에 자산화 관련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답변
자산화 금액 내역 작성	11-11, 16-1 의 자산화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칙)에 따라 세부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1) 11-11. 에는 계정과목이 기계기구인 내역을 작성하고 16-1. 에는 계정과목이 집기비품과 지식재산권 내역만을 작성해야하는지, 2) 11-11과 16-1 모두 현금흐름표상에 나와있는 자산화된 전체 내역(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식재산권 등)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에 따라 세부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11-11. 에는 계정과목에 관계 없이 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며, 16-1에는 계정과목에 관계 없이 연구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부내역을 작성합니다.
적합하지 않게 회계처리한 경우	11-7.연구윤리활동비를 작성하다 문의 드립니다. 연구노트 제작 비용을 연구윤리활동비로 집행 하였더라구요. 평가 자료를 작성 중 평가자료 작성 지침과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확인하니, 연구노트와 관련된 경비는 "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구요. 연구윤리활동비로 이미 지출된 비용을 불인정으로 판정해야 하나요?	○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에 적합하지 않게 회계처리된 금액은 불인정 되는 것처럼 지식재산 출원·등록비를 연구윤리활동비로 적합하지 않게 회계처리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 예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을 기관 공통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불인정

[14.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구분	질의	답변
작성법	14-6.(사립)교비회계운영계산서 항목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도 종류별로 나눠져있습니다. 4234 기관장 업무추진비 4235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4236 기타 업무추진비 4237 홍보비 .... 엑셀템플릿에는 4234 업무추진비만 나와있는데, 4235~4236번 항목의 경우 엑셀템플릿의 4234 업무추진비에 합하여 입력하면 될런지요?	ㅇ 엑셀 템플릿 상 4234 업무추진비에 작성해주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4234, 4235, 4236 항목을 합산하여 입력 부탁드립니다.
작성법	새로 올려주신 붙임3 템플릿 14번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내역(수정)에서 14-5 사립대학시트에 보면, 소계(1)번의 합계에 복리후생비가 빠져있는데 그냥 다 합산하면 되겠지요? 수식변경하지말라고하셔서 바꿔도 될런지요?	ㅇ 소계(1) 합계에 복리후생비가 합산되도록 수정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수정 템플릿 업로드 완료(유첨 파일 참조)**
작성법	학교회계 운영계산서는 수정이 되었는데 14.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안에 있는 교비회계운영계산서 수정이 안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정이 안된 운영계산서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교비회계운영계산서 내 목록, 예를 들어 5100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5110 등록금수입, 5111 학부입학금 등 목록 제목에 대한 수정은 삼가주시고,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내용에 맞추어 작성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대학에서 기존(21-22년도)에 작성하셨던 템플릿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비등록금 회계 관리운영비	템플릿 14-5. (사립)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작성시 유의사항을 보면, 다만,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의제 가능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의 의미가 템플릿에 작성되어있는 인정 항목들의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가 초과한다는 의미인지, 운영계산서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 금액이 초과하는 것의 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ㅇ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의제 가능하며, 이 때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의 비등록금 관리운영비 합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질의	답변
조정금액	14-5.의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총괄 "작성시 유의사항"에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의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기관은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만 존재하기에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관리운영비 중에서 조정금액에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 금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되고 전체 비등록금 관리운영비(14-5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운영비에 한해)가 전체 공통지원 관리운영비로 인정이 되는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ㅇ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없는 대학은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에 입력하고, 간접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연구진흥경비 등은 조정금액(B)에 입력하여 조정후 금액(A-B)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는 추후 대학간접비 산출 검증팀을 통해 수행될 예정입니다.

[15. 공공요금산출내역서]

구분	질의	답변
공공요금 인정 기준	1. 해설서상 '공공요금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열에너지료에 대하여 대학에서 선 집행 혹은 총괄집행하고 공공요금 보전목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부담비용을 청구할 것' 이라고 기술 되어 있는데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 연구시설'의 해석이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 사무실 및 산학협력단 관련한 연구소로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시설'만으로 해석 VS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실'+'연구시설' 해석과 관련한 유권 해석 요청 2. 2024년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의 교육시설 교육기본재산 보유 현황(2024.4.1. 기준)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 사무실을 계열별 부속시설로 입력하라고 가이드를 받았으나, 전년 2024년 부터는 별도의 산학협력단 입력 항목이 추가(교육기본시설-산학협력단) 되고 면적이 구분 표시되도록 집계표의 항목란이 구체적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만약 질의 사항 1에서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실도 공공요금 인정기준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2024년의 경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의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실 입력 면적을 근거로 산출하게 된다면 공공요금 인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1. 2024년도 "교육기본시설-산학협력단"로 입력된 면적을 근거로도 공공요금 인정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실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간접비 고시비율에 간접비용이 누락 되는 영향이 있는 사항과, 현재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내에서의 입력 및 집계표 변경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참고 요청 드립니다.	1. 해설서 상 '공공요금'은 기관공통비용으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를 의미합니다. '공공요금 인정기준' 내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은 산학협력단 본부 행정실 + 연구시설로 볼 수 있으나, 세부 집행내역이 불인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작성지침 및 해설 27p 참고사항 확인)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이 있으신 경우 제출하셔야 하고, 인정여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필요시 대면검증 절차에 따라 확인됩니다. 2. 작성지침 및 해설 내 27~28p 공공요금 인정기준 및 불인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인정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필요시 대면검증 절차에 따라 확인됩니다. (28p) Ⅲ.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①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캠퍼스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②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정산하는 경우 ③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④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공공요금을 비용에서 차감 처리했을 때에, 대학의 해당 회계가 (국립) 국고지원금 또는 수입대체경비이거나 (사립) 비등록금회계인 경우 3. 답변 `1, 2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정 기준	3. (대학회계) 공공요금 체계 및 납부는 건물별 구분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한 요금납부로 되어 있는데 총괄납부액으로 산정 해도 되나요?	3. 대학에서 총괄납부하더라도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이 계량 가능하여, 대학에 총괄 청구된 금액을 청구기준으로 건물별로 배분하여야만 인정됩니다(작성지침 및 해설서 중 공공요금 인정기준 참조)

구분	질의	답변
인정여부	14, 15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및 공공요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공요금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공통지원 관리운영비에서 공공요금 금액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1)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모두 국립암센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산학협력단으로 부담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15 공공요금 양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4와 15 양식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공공요금에 대한 인정기준, 증빙 등에 관하여서는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27-2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준템플릿 15-4 외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편,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출되는 운영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 산학협력단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표준템플릿 15에 작성하신 공공요금 관련 내용을 표준템플릿 14 내 해당 사항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여부	원가산출지침의 공공요금 인정기준을 보면 "공공요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일 것, 월별 집행 혹은 분기별 집행은 전년도 원가배분자료를 근거로 개산하며, 최종월 정산을 실시해야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문의1) "최종월 정산을 실시해야 함"의 의미가 회계연도 말월(2월)에 대한 공공요금을 가정산 하고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해 3월에 정상고지서 금액으로 수정하여 정산하라는 의미인가요? 문의2) 이 경우 실제 공공요금의 집행(계좌이체 등)이 당해 연도가 아닌 차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가산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공공요금의 경우 월별 실제금액 집행 혹은 분기별 실제금액 집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행정편의를 위해 전년도 원가배분자료를 근거로 실제금액과 상이하게 개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고 실제금액과 원가배분한 개산금액간의 차이분을 최종월 혹은 연말시점에 정산하여 상호간에 조정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가정산 후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상태로 회계처리한 사항은 “2025 대학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쟁점사항 작성 양식”을 작성·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16. 연간연구비]

구분	질의	답변
연구비 자산화	16-1. 연구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원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침에 보면 '연구와 관련된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계상하는 계정'인 기계기구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집행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집기비품취득한 금액은 제외하고 기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연구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에 기계기구만 기입할 수도 있고, 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식재산권 등도 기입할 수 있으나, 계정과목별(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식재산권 등)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템플릿 16번 연구비 자산화금액 세부내역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보내주신 연구비자산화 금액 및 세부내역 관련하여서 “산학협력단 소속 전체 사업과 관련된 자산내역을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산만 작성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산정 기준에는 아래처럼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ㅇ 표준템플릿 16-1은 산학협력단 소속 전체 사업에서 자산화된 금액으로 작성하되, 직접비로 취득한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단, 표준템플릿 16-1은 직접비 취득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직접비로 취득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7.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신청내역]

구분	질의	답변
장학금 수혜혜택	1. "17.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비회계에서는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있는데 교내장학금에 대해서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 교내장학금 또는 교외장학금 둘 중 하나만 입력해야 하는 거라면 해당 장학금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 교내장학금만 입력하면 된다고 가정한다면 교내장학금 안에서 어떤 내용의 장학금에 대해서인지)	ㅇ 템플릿 17. 교내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신청내역은 교외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ㅇ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ㅇ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을 적용하여 장학금을 작성하는 경우,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근로장학금 차감 후)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7-1.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내역은 템플릿 "8-3. 장학금 수혜 혜택"양식의 교내장학금 수혜 혜택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이사항	2023년 장학금 수혜내역을 확인하던 중 알리미에는 교내장학금 내에 "재난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칸을 임으로 추가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ㅇ 재난장학금은 '기타'에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도 제출하시길 요청드립니다.

[18. 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구분	질의	답변
R&D계수 적용사업 수익 근거자료 템플릿	2년 전 간접비 원가 산출 계산 시 18-2에 대한 작성 지침과 엑셀 양식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재는 엑셀파일도 없고 지침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력값이 간접비가 있는 재정지원사업을 의미하는데 그럼 간접비가 없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0%반영이기때문에 사업비 입력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총연구비 값을 입력해야하는 지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18-2. R&D계수 적용사업 수익 근거자료」는 표준 템플릿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형식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중에서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에 기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18-2번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간접비가 없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서 R&D계수를 0%로 반영하였다면 간접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2024회계연도에는 R&D계수 적용사업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대학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 수익 자료 작성	18.[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템플릿 작성 문의드립니다. 작성지침 53페이지를 보면 18.[연구수익비율 내역 등] 템플릿 세부내역의 18-1.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부분을 보면 (* 국립대학 양식을 사용하는 대학만 작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8-1.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ㅇ 사립대학의 경우 "표준템플릿 18-1. 대학회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법	2025년 간접비원가산출 중 18. 연구수익비율 내역 템플릿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사립대학이고, 지침서(p.202~203)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수익 중 교내장학금 및 교육부대수익은 교육수익 산출 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내장학금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제외하고 17.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산정 내역과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에 차감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대수익은 템플릿 상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시비율 산출Q&A(250612-250618)(p.8) 마지막 질의에 보면 사립대학은 18-1. 템플릿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해당 템플릿은 제출하지 않고,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에 교비회계 결산서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교육부대수익은 학교회계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표준템플릿 18-1 양식은 사립대학의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준템플릿 양식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에 교비회계 결산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간접비 지출내역서]

구분	질의	답변
간접비 작성 기준	20-1 간접비지출내역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지출내역서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2023, 2024회계연도의 기준을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3, 2024년도 제출자료를 둘다 동일하게 당기를 2024 회계연도로, 전기를 2023 회계연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2024 회계연도 지출내역서의 경우 당기는 2024 회계연도, 전기는 2023 회계연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ㅇ 2023 회계연도 지출내역서의 경우 당기는 2023 회계연도, 전기는 2022 회계연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작성법	20-1. 템플릿의 '항목별 검증 유의사항'을 보면 [간접비지출내역서 및 학교회계 전출금 지출내역서는 현금흐름표의 현금유출액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과 일치해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유의사항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Q1. 현금흐름표의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에는 '간접비 재원 취득 자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치할 수가 없는데요. ① 간접비 재원 취득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② 이 이유로 불일치한 금액에 대해 하단에 기재해야 하나요? Q2. 또한, 현금흐름표의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에는 산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기타지원비 항목이 있는데 20-1.템플릿은 회계처리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기타지원비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이전 Q&A답변을 보면 기타지원비 항목은 제외하라고 하신 걸 봤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불일치 사유에 대해 하단에 기재하면 될까요? ② 기타지원비로 사용한 금액은 간접비 지출로 인정이 안되나요? ③ 기타지원비 항목을 제외하면 통장 잔액과도 불일치 하게 될텐데 문제 없나요? ④ 위와 관련하여 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때 마다 회계처리규칙상의 기타지원비 항목이 충돌하여 매 번 불일치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을까요?	1. 현금흐름표와 일치하는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금액과 사유를 20-1. 템플릿 표 아래 부분에 기재해 주십시오. 2. 기타지원비 항목으로 인해 현금흐름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불일치 사유를 표 하단에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기타지원비 항목으로 인한 통장 잔액의 차이도 표 하단에 기재해 주십시오. 통장 잔액의 불일치로 인한 부분은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중에서 산단 현금흐름표와 연관이 되는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금액)은 산단 현금흐름표상 해당되는 세부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구분	질의	답변
	Q3.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까지 왜 현금흐름표의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써있는건가요?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은 학교 본교 결산에 반영되는 거 아닌지, 산단 현금흐름표와 관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간접비 작성	간접비 지출내역서 항목 중 결산 자료에는 기타지원비 항목이 있는데 해당 템플릿에는 기타지원비 항목이 없어서 이런 경우 어디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임의로 행 삽입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간접비지출내역에는 기타지원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 기타지원비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출내역서 템플릿을 변경하지 않고, 기타지원비 금액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지원비 금액 및 세부내역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아래에 별도로 기재해 주십시오.
기타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21.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에 따른 간접비 구분?배분 가이드라인에는 '기타지원비'가 있고, 사학진흥재단 결산 제출시 [별지 4의7] 간접비지출내역서 양식에도 '기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16]에는 없습니다. 답변주신것처럼 하단에 별도 기재를 하면,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을 '기타지원비'를 포함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빼고 해야하는지요? 이에 따라 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과 통장잔고가 다르게 표현되어 문의드립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간접비지출내역에는 기타지원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 기타지원비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출내역서 템플릿을 변경하지 않고, 기타지원비 금액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지원비 금액 및 세부내역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아래에 별도로 기재해 주십시오. ㅇ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면검증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 작성	템플릿을 수정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수정된 템플릿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계정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할까요. 기존 템플릿에 없는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완료하였는데 템플릿이 또 변경되었다고 안내가 오니 혼란스럽네요.	ㅇ 템플릿 20에 대하여 '임의로 행 또는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이 있으면 표 아래 쪽에 내용을 기재함'을 요청 드립니다. ㅇ 템플릿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작성된 양식 하단에 추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구분	질의	답변
특이사항 작성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그동안 운영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번에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바꿔서 작성해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Q1. 2024회계연도 지출 내역 자체는 현금흐름표로 작성하는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초 간접비 재원의 금액과 기말 간접비 재원의 금액이 상이하게 되는데, 어떤 금액 기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에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시 모든 간접비가 섞여있어서 R&D사업과 기타사업 간접비를 분리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KISTEP 담당자와 한국연구재단 회계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려서 우선은 그 해 간접비를 기준을 제로베이스로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Q2. 그래서 현재 통장 잔액과 기술된 간접비 잔액이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기준점을 잡고,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맞추고 싶은데..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연구비체계평가와 결산보고에서의 간접비 지출내역서 금액과 나중에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간접비 산출에서의 간접비 지출내역서가 금액이 상이해도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는 최대한 기준으로 찾아서 다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딱 잘라서의 기준도 없었고, 중간에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실무자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간접비 지출내역서는 현금흐름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원칙입니다. 작성원칙과 상이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템플릿에 추가 행 없이 하단에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은 2024회계연도 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면검증 등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2. 기준점을 무엇으로 해야할지에 대한 결정은 대학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를 일치하여 간접비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접비는 전표 작성 시부터 구분회계 단위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를 포함한다)에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비로 발생하는 항목은 전표 작성 시부터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결산조정에서 전표를 입력하더라도 전표 작성 시부터 별도의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본다.

구분	질의	답변
특이사항 작성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 간접비지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간접비지출내역서 설명 내용에서 "-임의로 행 또는 열을 삭제하지 않아야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이 있으면 표 아래 쪽에 내용을 기재함"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에 기타사업 간접비 재원으로 출자금과 기타기금 적립 지출이 있고 해당 지출내역을 결산서 간접비지출내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원가산출에서 작성하는 간접비 지출내역서에는 추가, 삭제가 어렵고 양식의 아래 쪽에 작성하면 기말과 기초의 간접비 재원 잔액이 결산서 상 간접비지출내역서 기말과 기초의 간접비 잔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유의사항에 어긋나게 되는데 기관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간접비지출내역에는 기타지원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산학협력단 결산자료에 기타지원비를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출내역서 템플릿을 변경하지 않고, 기타지원비 금액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지원비 금액 및 세부내역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아래에 별도로 기재해 주십시오. ㅇ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면검증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 작성	20-2 항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내역서 작성 할 경우 학교 측에 전출금 관련하여 지출내역서 요청할 경우 학교 회계전출내역서가 해당 항목이 아닌 항목에서 내역으로 비용지출이 되어 있을 경우 템플릿 아래에 전출금 내역서와 세부내역서가 일치하는 않는 이유에 대해 특이사항 또는 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ㅇ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특이사항은 작성된 양식 하단에 별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에 대한 인정 여부는 추후 진행되는 검토 및 검증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1. 자가검증체크리스트]

구분	질의	답변
내용 문의	템플릿 21.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관련 문의 합니다. 체크리스트 3p. 공통불인정항복의 확인 중 - 청소/경비 용역비, 리모델링비용, 임대료, 장려금성 여비, 차입금성 상환(BTL로 추정), 물품성 장려금(직접비 집행품목) 등이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운영비 및 연구관리운영비 불인정으로 내용이 있으나, 실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26p. 에선 청소/경비 용역비 내용이 없는데 어딜 기준으로 기관공통경비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ㅇ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운영직 인건비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ㅇ 시설관리업무는 대학회계에서 용역비로 지출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자료작성지침 및 해설 18p 〈참고사항〉 하단 참조) ㅇ 문의하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상 기관공통비용에는 대학 전체의 청소 경비 용역비 배분액 등 학교회계전출금 성격의 비용을 불인정하며, 산학협력단 공간에 대한 청소 경비 용역비 실 발생액을 기관공통비용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질의	답변
1.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에는 기초자료 제출 시 공문 제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서 제출 안내 메일에는 [신청서 및 자료제출 관련 공문은 제출하지 않음]으로 안내되어 공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자가검증 체크리스트에 기관장 날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에도 [산학협력단 단장 직인]으로 날인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6/30 (월) 18시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공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총장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나, 간접비 원가 산출은 대부분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xx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 후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도 허용합니다.
부실자료 벌점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p. 43에 벌점누계에 대한 감률정보만 나와있고 부과기준은 없습니다.	ㅇ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내 [붙임3]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pp. 213-2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대학이 2025.03.01일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이와 같을때 작성을 2023.2024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자료를 국립경국대학교 자료로 통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때 통합을 위한 작성자료와 각 대학의 기초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통합 전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상북도(지자체) 직속 전문대학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해본 이력이 없을 뿐더러, 안내를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통합전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으로 파견(인사발령, 2023~2024년도 해당) 된 직원의 인건비가 학교회계 인건비내역에 기재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기재 해야된다면 공통지원으로 산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구지원전담인력은 아니고 인사조서에 따른 산학협력단 운영, 기획 및 지출, 구매계약등 업무분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인원은 2명, 파견(인사발령), 경상북도 공무원 1명, 대학회계직원 1명 입니다.	ㅇ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로 분류되며, 그 외 업무 또는 겸직인 경우는 공통지원 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됩니다. ㅇ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한 곳이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아닌 국비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대학회계) 각종 세출자료는 코러스 시스템이 아닌 자체 회계ERP로 집계된 값으로 산정가능 한가요?	4.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코러스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